

C2007-19 / 2007.8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김정호 최경환 이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7-19 / 2007.8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부 원 장 김 정 호
연구위원 최 경 환
연구 원 이 용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연구자	담당분야
부원장 김정호	총괄, 정책 검토
연구위원 최경환	고령농 실태분석, 외국 사례
연구원 이용호	자료 분석 및 정리

머 리 말

이 연구보고서는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 초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또 한 차례의 커다란 시련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농업인, 학계와 연구소, 관련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금년 6월 말까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당부처에서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진 대책, 품목별 경쟁력 향상 대책, 개방 진전에 따른 단기적 피해보전 장치 확충, 교육·복지 개선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세부시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FTA 이행지원 특별법령”을 개정하여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미 FTA의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 도입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보고서가 관련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7.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고령농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이 연구는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제도 도입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농업구조 변화의 동향과 고령농의 성격

-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생산 비중은 빠르게 감소(1970~'05년 간 연평균 6.0%)하는 반면, 농업취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1970~'05년간 연평균 5.2%)함으로써 농업 부문에는 취업자 과잉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다른 직업으로 전직이 어려운 고령자가 농업 부문에 누적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게 됨.
-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경영주 연령별 세대구성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60~70대 농가의 세대구성 중 1인 및 1세대 농가가 높은 비중(74%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고령농가의 상당수가 독거노인 내지는 노부부 2인 형태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령농가는 대체로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으로, 경지규모는 1ha 미만, 농산물 판매액은 500만원 미만의 자급적 형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품목은 논벼와 채소 생산이 많은 경향임.

□ 고령농업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안전망 실태

- 고령농업인의 실태는 전문조사기관이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업인 492명을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음.
- 고령농업인의 85%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사일 밖에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임. 즉, 농사 이외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영농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 조사대상 농업인의 2005년도의 평균 연간 소득은 1,054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근로소득이 828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적 이전소득(111만원)임.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데 주로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함.
- 고령농업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64만원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생활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마련하거나 일부만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고령농업인이 72%를 차지하며, 대다수 고령농업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다수의 고령농업인들이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며, 국민연금 가입율은 26%로 조사되었음. 또한 조사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농업인은 5.9%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일반수급자는 3.5%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2.4%인 것으로 나타남.
- 고령농업인의 82%는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저축(15.2%), 농지매각 또는 임대(12.0%), 공적연금(9.3%) 등을 활용하고 있음. 노후생활보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사회보장제도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농업구조 개선과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방안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주업농은 규모화와 직불제로 소득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령농은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복지서비스 강화로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며,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임.
- 농업경영의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농정 차원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특히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업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촉진하도록 해야 함.
-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안정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의 검토가 필요함. 첫째,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고령농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연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대 등을 확충해야 함. 둘째, 은퇴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서, 상업적 농업으로부터 영구 은퇴하면서 농촌거주 조건으로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임. 셋째, 농지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넷째, 고령농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지연시키는 제도나 정책은 재검토하거나 방향 전환이 필요함.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velihood Stabilization Programs for elderly Retired Far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ntroduce the livelihood stabilization programs for elderly retired farmers in order to change agricultural structure in a favorable way and promote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elderly retired farmer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aimed at expecting problems that might be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programs and providing appropriate policy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Many elderly farmers do small scaled-farming with living either alone or together with their spouse. Insufficiency of social safety net such as the government's welfare services makes them engage in farming for earning a living although, otherwise, they might be retired. A sample survey shows that the national pension ratio of elderly farmers is no more than 2.6% and the percentage of the farmers who benefit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nothing but 5.9%. 82 percent of elderly farmers cannot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properly.

To improve agricultural structure, agricultural policies have to be transformed to the cafeteria-style programs selected directly by policy demanders. That is, farmers themselves select suitable policy programs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 levels. For elderly farmers, the programs creating jobs suitable to them and strengthening welfare services for their retirement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make elderly farmers

retire from farming without any anxiety about earning a living. The government support relating to farming should phase down so as to change agricultural structure in a suitable way.

The examination of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or stabilizing the livelihood of elderly farmers and helping them retire from farming is necessary. First, welfare services increasing the quality of elderly retired farmers' living should be strengthened. The creation of jobs suitable to physical abilities of elderly retired farmers, national pension support, labor support for vulnerable farm households, residential home care service should be expanded. Second, a policy measure, such as the livelihood stabilization fund for elderly retired farmers living in rural areas, to compensate for the decrease in income caused by retiring from farming is examined. Third, rural-typed reverse mortgage loan is necessary to transform assets such as lands to income. Fourth, policy measures and systems to prevent elderly farmers from retiring of their own initiative have to be reappraised.

Researcher: Jeong-Ho Kim, Kyeong-Hwan Choi, Yong-Ho Lee
e-mail Address: jhkim@krei.re.kr

목 차

요 약	i
Abstract	v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5
제2장 농업구조 변화의 동향과 고령농의 성격	6
1. 농업구조 변화의 동향	6
2. 고령농가의 경영체 성격	13
3. 고령농가의 경제 상황	16
제3장 고령농업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안전망 실태	20
1. 조사 개요	20
2. 고령농업인의 가족 구성과 자산 상황	22
3. 고령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	30
4. 고령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실태	48
제4장 외국의 고령농 소득지원 정책	67
1. 일본의 사례	67

2. 영국의 사례	70
3. 독일의 사례	73
4. 정책적 시사점	77
제5장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78
1.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78
2.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제도의 현황	82
3. 고령 은퇴농 소득지원의 필요성과 의의	85
4.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88
참 고 문 헌	97
부록: 2006년 농가경제통계 소득분포 분석	99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의 추이	8
표 2-2. 농업생산액의 품목류별 추이	10
표 2-3. 대농의 농가 비중 및 생산 비중 추이	11
표 2-4. 농업법인 현황	12
표 2-5.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구성 비율	13
표 2-6.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경지면적	14
표 2-7. 연령별 가구원수별 농가구성 비율	15
표 2-8. 연령별 세대구서별 농가구성 비율	15
표 2-9. 연령별 농축산물판매액별 농가구성 비율	15
표 2-10. 경영주 연령별 소득 및 가계비	16
표 2-11.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소득 및 가계비	17
표 2-12. 경영주 연령별 영농형태별 소득 및 가계비	18
표 2-13. 경영주 연령별 영농형태별 농가구성 비율	18

제 3 장

표 3-1. 응답자 특성	21
표 3-2. 가구원수별 분포	23
표 3-3. 자산 보유 현황	25
표 3-4. 농지 소유 현황	26
표 3-5. 주택 소유 현황	27
표 3-6. 가축 소유 현황	28

표 3-7. 농기계 소유 현황	29
표 3-8. 자동차 소유 현황	30
표 3-9. 농사일 참여 정도	31
표 3-10. 농사일 참여 이유	32
표 3-11. 금후 영농 지속 의사	33
표 3-12. 농외소득 활동 참여 여부	34
표 3-13. 농외소득 활동 참여 이유	35
표 3-14. 월 평균 수입(농외소득활동 참가자)	36
표 3-15. 농외소득활동 미참여 이유	37
표 3-16. 향후 농외소득활동 참여 의사	38
표 3-17. 소득원별 가구소득	39
표 3-18. 근로소득 현황	40
표 3-19. 자산소득 현황	41
표 3-20. 소득 만족도	42
표 3-21. 사적 이전소득 수준	43
표 3-22. 생활비 마련 방법	44
표 3-23. 월평균 생활비	45
표 3-24. 가장 부담이 큰 지출 항목	46
표 3-25. 부채 현황	47
표 3-26. 부채의 주요 원인	48
표 3-27. 연금 가입 현황	49
표 3-28. 연금보험료 납부여부	50
표 3-29. 월평균 연금 수령액	51
표 3-30. 의료보험 가입 현황	52
표 3-31.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53
표 3-32. 고용보험 가입자 유무	54

표 3-33. 산재보험(농업인안전공제)가입 유무	54
표 3-34. 산재보험(농업인안전공제) 수혜자 유무	54
표 3-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실태	55
표 3-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탈락 경험	56
표 3-3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이유	57
표 3-38. 긴급지원제도 인지 정도	58
표 3-39.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경험	59
표 3-40. 노후생활준비 시기와 정도	60
표 3-41. 노후생활 대비 내용	61
표 3-42. 노후생활 대비 정도	62
표 3-43. 노후 생활비 마련 책임	63
표 3-44. 자신의 건강 상태 판단	64
표 3-45. 만성질환 유병률	65
표 3-46. 자기부담 과다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수급 경험	66
표 3-47.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농촌노인복지서비스	67

제 5 장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자 제도의 지원 수준	83
표 5-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분포	85
표 5-3.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량	87
표 5-4.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과 경영이양직불제의 비교	90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곡선 추이	7
그림 2-2. 농가인구 연령별 구성 변화	7
그림 2-3. 경종작물의 생산 추이	9
그림 2-4. 농업총생산액과 농업총소득 추이	10
그림 2-5. 농가 수 및 경지면적의 추이	1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앞두고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농업구조개선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영세소농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경영주체인 농가가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성이 저하되는 고령 농업인의 유연한 은퇴와 경영이양이 중요한 과제임.
 - 기존의 농업정책은 전업농 중심의 생산지원에 치중하였으며, 고령농의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적 대책은 소홀하여 생계형 영농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 고령농의 은퇴를 촉진함으로써 젊고 능력있는

인력과 경영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2006년에 “맞춤형농정”을 구상하고 농가유형별로 정책을 차별화하는 구조정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있음.
 - 맞춤형 농정은 정부가 농가 유형별로 도입 가능한 정책프로그램을 메뉴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은 스스로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 추진 방식임.
 - 맞춤형농정의 틀 속에서 농업경영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는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은퇴를 지원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이 연구는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선행연구 검토

2.1. 농업구조정책에 관한 연구

- 정명채 등(1997)은 그동안 시행된 농림사업 지원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조사 농가를 경영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지표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농가의 4가지 유형별 경영규모 변화와 그 요인, 농림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영농의사, 영농 확대의사 등을 파악함으로써 중소농과 고령농가 대책을 검토함.

- 이정환(1998)은 “농업의 구조전환” 연구를 통하여 농업의 취업비중 감소가 생산비중 감소보다 훨씬 완만하게 진행됨으로써 생산비중 감소와 긴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고 주장함. 또한 농정개혁은 관련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이 조직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21세기 농정은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식량정책, 경쟁에서 탈락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 정책, 중앙농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농정을 조화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정호 등(2003)은 농업총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농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함. 농가의 농업경영체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있으며, 후계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함.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의 경지규모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논벼, 과수, 채소 등의 경종농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였음.
- 김정호 등(2005)은 “맞춤형농정 추진방안” 연구를 통하여 농림부가 도입 예정인 “맞춤형농정”의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음. 구체적으로 “맞춤형농정”의 이론적 기초 및 정책 틀을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종합적인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농업경영체(농가+농업법인) 유형별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현행 정책프로그램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도입 가능한 정책을 제안함. 특히 “맞춤형농정”의 실시를 위한 농가등록제의 도입 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였음.

2.2. 고령농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 한정자 등(2002)의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실태 및 복지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고, 나아가 여성적 관점에서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 농촌노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소득보장 정책, 의료 정책, 복지 서비스, 주택 정책, 사회적 서비스 정책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박대식(2004)은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특히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하여 농촌노인들의 영농 활동,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소비·저축 및 부채 실태 등을 검토함.
- 김용택 등(2004)은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연구에서 농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특히 농가소득안전망의 개념 정립,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 분석, 기존의 농가소득 보전대책에 대한 평가, 선진국들의 농가소득 보전대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농가소득 보전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규모 추정,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의 수립에 필요한 보완대책 등을 제시함.
- 박대식 등(2006)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농촌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다차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 농촌노인들의 사회안전망 수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주요 선진국의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실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농촌노인 유형별 전략을 수립하여 1·2·3차 사회안전망 분야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 이 연구는 고령 농업인의 경영과 생활 실태 및 은퇴 후의 의향 등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주된 연구 내용임.
- 이 보고서는 서론을 제외하고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2장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농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총조사와 농가경제통계의 원자료를 분석함. 농업총조사를 통해서도 고령 농가의 경영체 성격을 분석하고, 농가경제통계를 통해서도 소득과 부채 및 가계비 상황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영농과 생활 실태 및 향후 의향을 표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2006년 10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조사”(연구책임자 박대식)의 표본 1,000명 중에서 농업인 492명을 따로 분리하여 재집계하였음.
- 제4장에서는 외국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지원 사례로 일본, 영국, 독일의 실태를 정리함.
- 제5장에서는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제시함. 특히 제도 도입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

제 2 장

농업구조 변화의 동향과 고령농의 성격

1. 농업구조 변화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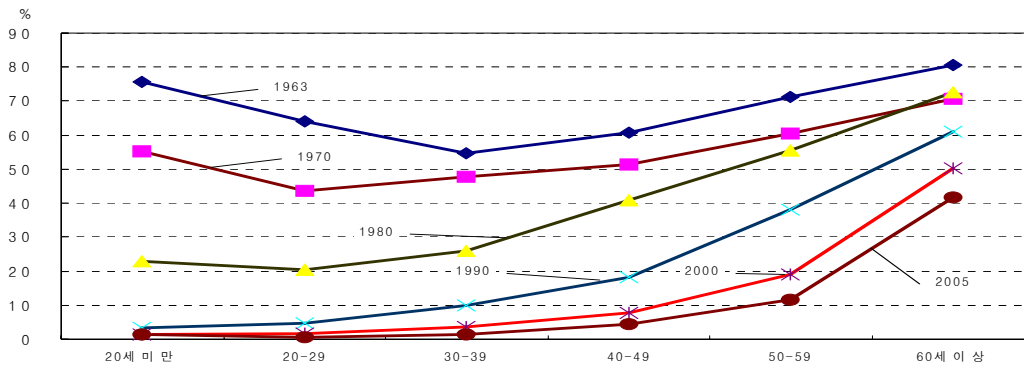
1.1. 산업화에 따른 농업인력구조 변화

-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 비중 감소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2~5배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응이 늦은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누적됨.
 - 생산구조조정(농업생산 비중 감소 40%→7%)에 소요된 기간: 유럽 5개국 평균 117년, 미국 92년, 일본 73년, 한국 26년
- 농업GDP 비중은 빠르게 감소('70~'05년간 연평균 6.0%)하는 반면, 농업취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70~'05년간 연평균 5.2%)함으로써 농업 부문에는 취업자 과잉 현상을 초래함.
 - 농업GDP 비중: ('70) 25.5% → ('80) 13.8 → ('90) 7.8 → ('05) 2.9
 - 농업취업자 비중: ('70) 49.5% → ('80) 32.4 → ('90) 17.1 → ('05) 7.6
- 1970~'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직이 어려운 40대 후반의 인력이 농업 부문에 누적되고 이들이 고령화됨으로

써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게 됨.

- 60세 이상 농업취업자 비중: ('70) 6.3% → ('80) 11.1 → ('90) 23.7 → ('05) 54.8

그림 2-1.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곡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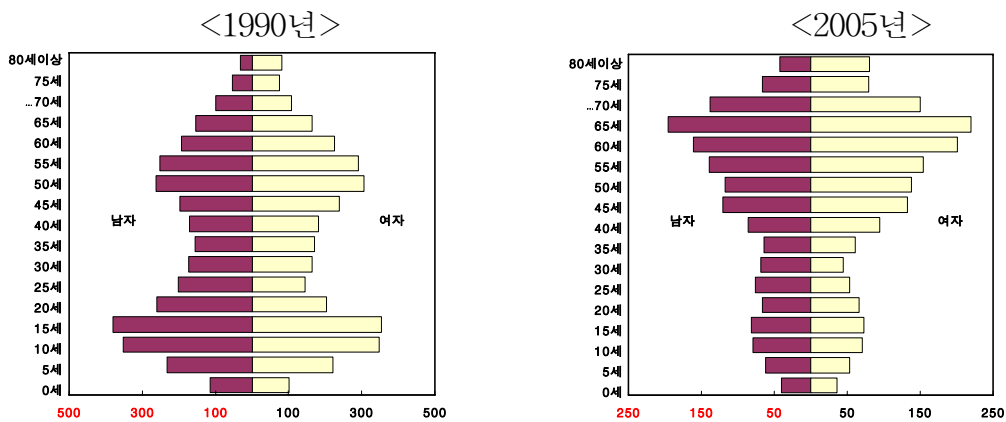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피라미드형'이었으나, 1990년에는 10대와 50대 비중이 두터운 '항아리형' 구조를 나타냈고, 2005년에는 60대 비중이 최빈수인 '역삼각형' 형태를 나타냄.

- 고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90) 56 → ('05) 306

그림 2-2. 농가인구 연령별 구성 변화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 경영주는 고령화하는 반면 신규취농 인력이 미흡하여 은퇴연령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농가(대부분 독신 또는 노인부부)로 잔류하게 됨.
 - 50세 미만 경영주는 1995년 27.9%에서 2005년 17.9%로 감소
 - 70세 이상 경영주는 1995년 12.7%에서 2005년 24.5%로 증가
- ※ 영농후계자 보유농가 비율: ('90) 16.4% → ('00) 11.0% → ('05) 3.6%

표 2-1.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의 추이

단위 : 천호, %

연 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 계
1995년	12 (0.8)	134 (8.9)	272 (18.2)	447 (29.8)	445 (29.6)	190 (12.7)	1,501 (100.0)
2005년	2 (0.2)	40 (3.1)	186 (14.6)	302 (23.8)	430 (33.8)	311 (24.5)	1,273 (100.0)
2015년 (추정)	0.5 (0.1)	8.4 (1.0)	59 (6.7)	207 (23.5)	368 (41.7)	240 (27.2)	8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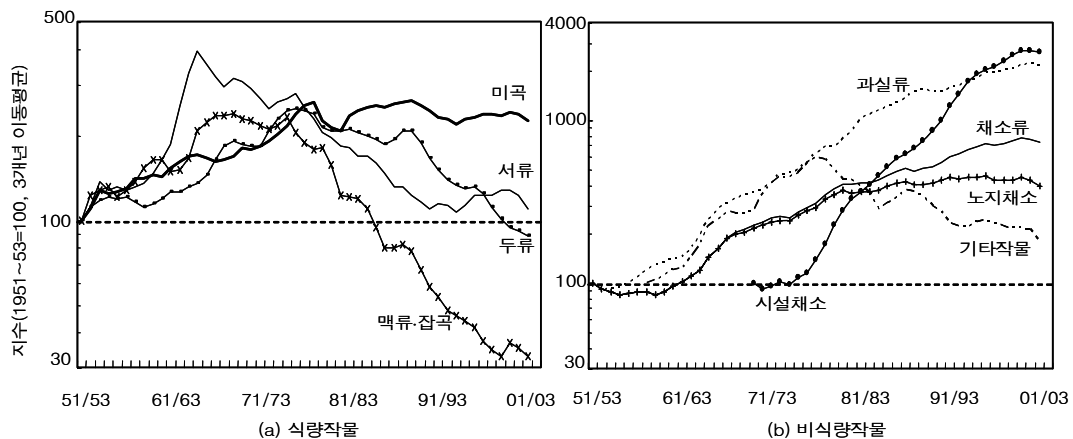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1.2. 식품소비 추세와 농업생산구조 변화

-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쌀 소비는 빠르게 감소하고, 과일과 육류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양곡 소비량은 1967년 1인당 197kg을 최고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쌀 1인당 소비량은 1979년 135.6kg을 기록한 후 연평균 2% 속도로 빠르게 감소하여 2006년에 78.8kg 수준
 - 기타 곡물의 2006년 소비량은 보리 1.2kg, 밀가루 1.3kg, 두류 3.0kg, 서류 2.4kg, 잡곡 0.5kg 등임.
-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의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채소류는 1980년 120kg 수준에서 2005년 160kg 수준으로 증가
 - 과일류는 1980년 17kg 수준에서 2005년 42kg 수준으로 증가

- 육류는 1980년 13kg 수준에서 2005년 39kg 수준으로 증가
 - 우유류는 1980년 10kg 수준에서 2005년 53kg 수준으로 증가
- 1980년대 들어 농업생산이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장작목과 쇠퇴작목으로 분화하기 시작함. 특히 쌀 자급을 실현한 후 식량작물 생산이 정체 내지는 감소로 전환되면서 과일, 채소, 축산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함.

그림 2-3. 경종작물의 생산 추이(1951~2003, 1951/53=100)



자료: 유명봉, "21세기 한국 농업의 성장 전략",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 비전』(심포지움 시리즈),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2005.9.

- UR 타결 이후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은 정체 국면으로 전환됨. 2000년대 들어 농업총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품목별로 성장과 쇠퇴가 명확해짐.
 - 축산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채소와 과일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이 다소 정체 경향임.
-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1995년부터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 추세로 반전되어 농업소득의 정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생산액은 증가하지만 농업소득은 늘

어나지 않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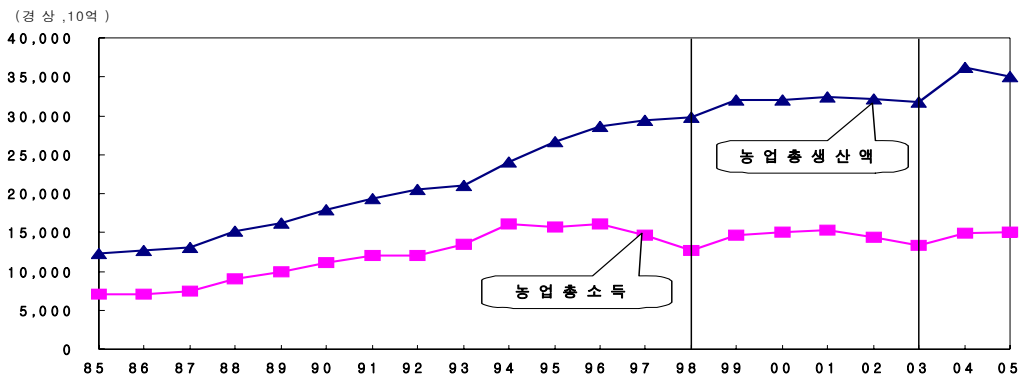
표 2-2. 농업생산액의 품목류별 추이

단위: 10억원(2000년 기준)

구분	식량작물	채소	과실	특작기타	축산	합계	
1995년	9,975 (32.1)	7,534 (24.2)	3,482 (11.2)	2,982 (9.6)	7,125 (22.9)	31,098 (100.0)	
2000년	11,362 (35.7)	6,858 (21.6)	2,603 (8.2)	2,959 (9.3)	8,035 (25.3)	31,818 (100.0)	
2004년	9,201 (29.8)	6,661 (21.6)	2,508 (8.1)	3,088 (10.0)	9,428 (30.5)	30,885 (100.0)	
변화율(%)	95~00	2.64	-1.86	-5.65	-0.15	2.43	0.46
	00~04	-5.14	-0.73	-0.93	1.07	4.08	-0.74

주: 생산액은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3개년 이동평균치임.

그림 2-4. 농업총생산액과 농업총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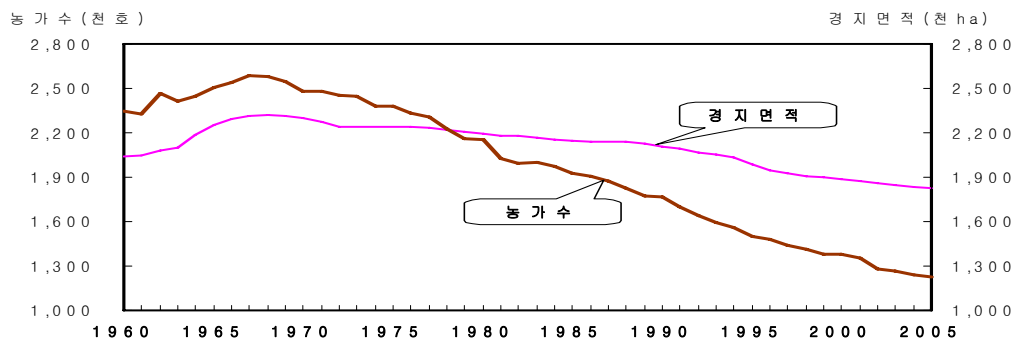
주 : 1998년은 외환위기 영향, 2003년은 냉해와 구제역 영향임.

1.3. 시장경쟁을 통한 농업경영구조 변화

-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지면적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됨으로써 호당 경지규모 확대가 진전됨.
- 농가호수는 1970년 기점으로 연평균 1.9%씩 감소, 경지면적은 1968년 기점으로 연평균 0.6%씩 감소
- UR 농업협상 타결 이후에는 시장개방 진전으로 농가호수 감소 속

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

그림 2-5. 농가 수 및 경지면적의 추이



- 1990년대 들어 대규모 농가로의 농지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 등은 대농의 생산 집중이 현저함.
 - 논 3ha 이상 경영농가는 1990년에 호수 비중 1.2%, 면적 비중 6.2%였으나, 2005년에는 호수 비중이 4.9%, 면적 비중이 26.4%로 증가
 - 한우 30두 이상 사육농가는 1990년에 호수 비중 0.5%, 두수 비중 9.9%였으나, 2005년에는 호수 비중 6.9%, 두수 비중 47%로 증가

표 2-3. 대농의 농가 비중 및 생산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1995		2000		2005		2015(추정)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경영규모								
논 3ha 이상	2.8	14.8	3.8	20.0	4.9	26.4	9.0	36.8
밭 2ha 이상	2.5	18.0	3.2	24.0	3.9	30.0	5.7	41.9
과수원1ha이상	13.6	42.9	14.1	44.3	14.6	45.8	15.7	48.7
시설0.66ha이상	12.4	38.3	10.5	47.1	9.6	52.9	7.5	56.1
연도	1995		2000		2005		2015(추정)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경영규모								
한우 30두 이상	1.7	16.6	3.1	36.4	6.9	46.9	14.4	58.8
젓소 50두 이상	5.6	17.8	28.0	50.4	49.9	71.6	73.7	92.1
돼지 1천두 이상	2.4	36.5	9.8	60.2	24.0	77.9	42.4	88.2
닭 3만수 이상	0.3	44.0	0.5	60.1	1.1	73.7	2.2	82.3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농림부, 가축통계.

- 한편, 영세 고령농가는 생계유지 또는 자급적인 영농을 영위하는 경향이며, 이들은 농지보유 의향이 강하고 경영은퇴시까지 영농을 지속하려는 의향이 강함.
 - 2005년 농업총조사에 의한 영세농 성격(경지 0.5ha 미만 농가): 농가수 47만호(비율 37.3%), 경지면적 합계 123천ha, 경영주 70세 이상 비율 47%
- 1990년부터 가족농의 발전적 형태로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되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농업조직체의 법인화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경향임.
 - 기업적인 농업경영체로 축산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작업 서비스사업체, 공기업 경영체 등이 존재함.
 - 2005년 말에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총 5,626개소이며, 영농조합법인(협업체)과 농업회사법인(기업체)은 대부분 농업경영보다는 가공·유통사업에 중점을 두는 경향임.
 - 농업법인은 농업 부문에 기업적 경영기법의 확산 및 경영자 능력의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2-4. 농업법인 현황(2005년)

단위: 개, %

구 분	운영중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개별운영
	개	비율			
합 계	5,626	100.0	2,841	708	1,711
영농조합법인	4,293	76.3	2,396	562	1,335
농업회사법인	967	17.2	445	146	376
일반회사법인	88	1.6	-	-	-
기 타	278	4.9	-	-	-

주: 기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2. 고령농가의 경영체 성격

- 2005년 농업총조사를 통하여 고령경영주 농가의 농업경영체 성격을 살펴보기로 함.
-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젊은 경영주인 30~40대가 1.57ha로 가장 크며,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경지규모가 적어져 70대 이상의 경우 0.77ha로 나타남.
 - 경지면적별 비중에서도 30~40대 젊은 경영주 농가의 13.6%가 3ha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반면, 70대 이상의 경영주가 3ha 이상 경작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함.
 - 경영주 연령이 60대와 70대 이상 농가 중 경지면적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비율이 각각 61.4%, 76.5%로 나타나 고령농가의 영세화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말해주고 있음.

표 2-5.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구성 비율(2005년)

단위: %

		30-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평균면적		1.57	1.44	1.11	0.77
비중(%)	1ha미만	58.3	56.2	61.4	76.5
	1-3ha	28.1	32.5	33.4	21.8
	3ha이상	13.6	11.3	5.3	1.7
합 계		100 (228,241)	100 (302,852)	100 (430,473)	100 (311,342)

자료: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보유농지 면적은 총 1,511천ha로 집계되었으며(그밖의 농지 약 30만ha는 법인 등의 소유로 추정), 이를 농업경영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65세 이상 경영주의 보유 면적이 484천ha로 전체의 32%를 차지함.
 - 경영주 75세 이상의 보유농지가 80천ha, 70세 이상의 보유농지가

238천ha이므로, 이들 농지는 농업경영주의 자연은퇴에 따라 유동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표 2-6.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경지면적 (2005년)

단위: ha

	0.5미만	0.5-1.0	1.0-1.5	1.5-2.0	2.0-2.5	2.5-3.0	3.0-4.0	4.0-5.0	5.0-7.0	7.0-10.0	10ha이상	합계
30세 미만	252 (0.02)	392 (0.03)	294 (0.02)	244 (0.02)	177 (0.01)	214 (0.01)	286 (0.02)	196 (0.01)	268 (0.02)	295 (0.02)	403 (0.03)	3,021 (0.20)
30-34	1,170 (0.08)	1,749 (0.12)	1,438 (0.10)	1,268 (0.08)	823 (0.05)	821 (0.05)	1,378 (0.09)	923 (0.06)	1,412 (0.09)	1,341 (0.09)	2,083 (0.14)	14,407 (0.95)
35-39	3,015 (0.20)	4,935 (0.33)	3,929 (0.26)	3,859 (0.26)	2,589 (0.17)	2,673 (0.18)	4,669 (0.31)	3,002 (0.20)	4,479 (0.30)	3,786 (0.25)	5,327 (0.35)	42,262 (2.80)
40-44	6,413 (0.42)	11,263 (0.75)	9,348 (0.62)	9,725 (0.64)	6,809 (0.45)	6,860 (0.45)	11,298 (0.75)	7,712 (0.51)	11,969 (0.79)	9,250 (0.61)	14,519 (0.96)	105,165 (6.96)
45-49	10,528 (0.70)	19,328 (1.28)	17,491 (1.16)	18,038 (1.19)	13,724 (0.91)	13,258 (0.88)	22,489 (1.49)	15,478 (1.02)	21,932 (1.45)	17,359 (1.15)	23,824 (1.58)	193,449 (12.81)
50-54	12,208 (0.81)	23,120 (1.53)	21,232 (1.41)	22,061 (1.46)	16,615 (1.10)	15,636 (1.04)	25,533 (1.69)	16,284 (1.08)	21,033 (1.39)	15,506 (1.03)	19,113 (1.27)	208,340 (13.79)
55-59	14,700 (0.97)	29,704 (1.97)	29,004 (1.92)	28,621 (1.89)	21,192 (1.40)	18,472 (1.22)	26,842 (1.78)	15,976 (1.06)	18,699 (1.24)	11,470 (0.76)	13,146 (0.87)	227,826 (15.08)
60-64	17,640 (1.17)	37,813 (2.50)	36,925 (2.44)	33,603 (2.22)	23,186 (1.53)	18,298 (1.21)	23,193 (1.54)	12,895 (0.85)	12,628 (0.84)	7,457 (0.49)	8,097 (0.54)	231,734 (15.34)
65-69	23,436 (1.55)	51,322 (3.40)	48,270 (3.20)	38,792 (2.57)	23,675 (1.57)	16,411 (1.09)	18,502 (1.22)	8,267 (0.55)	8,301 (0.55)	4,285 (0.28)	4,801 (0.32)	246,061 (16.29)
70-74	21,823 (1.44)	42,349 (2.80)	33,563 (2.22)	22,216 (1.47)	11,819 (0.78)	7,414 (0.49)	7,408 (0.49)	3,398 (0.22)	3,352 (0.22)	2,037 (0.13)	2,554 (0.17)	157,931 (10.46)
75세 이상	17,954 (1.19)	25,306 (1.68)	14,674 (0.97)	8,433 (0.56)	4,200 (0.28)	2,506 (0.17)	2,698 (0.18)	1,325 (0.09)	1,354 (0.09)	955 (0.06)	947 (0.06)	80,352 (5.32)
합계	129,138 (8.55)	247,281 (16.37)	216,169 (14.31)	186,860 (12.37)	124,807 (8.26)	102,562 (6.79)	144,295 (9.55)	85,454 (5.66)	105,427 (6.98)	73,740 (4.88)	94,815 (6.28)	1,510,548 (100.0)

자료: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 30~40대 젊은 경영주 농가의 경우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인 경우가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60~70대 경영주의 경우 7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농가의 대부분이 2인 이하의 소규모 가족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영주 연령별 세대구성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60~70대 농가의 세대구성 중 1인 및 1세대 농가가 높은 비중(74%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고령농가의 상당수가 독거노인 내지는 노부부 2인 형태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2-7. 연령별 가구원수별 농가구성 비율

단위: %(호)

구 분		30-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가구원 수		3.82	2.94	2.35	2.11
가구원 수	2인 이하	20.6	44.7	71.4	82.7
	3-4인	48.0	43.3	22.2	11.6
	5-6인	28.6	10.9	5.2	4.7
	7인 이상	2.9	1.1	1.2	1.1
합 계		100 (228,241)	100 (302,852)	100 (430,473)	100 (311,342)

자료: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표 2-8. 연령별 세대구성별 농가구성 비율

단위: %(호)

	30-40대	50대	60대	70대
1인	4.8	8.1	17.3	25.1
1세대	10.0	32.6	50.4	54.5
2세대	62.7	47.2	24.5	13.4
3세대	22.0	11.8	7.5	6.9
4세대	0.4	0.4	0.4	0.1
합 계	100 (228,111)	100 (302,727)	100 (430,395)	100 (311,281)

자료: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비혈연가구 제외.

표 2-9. 연령별 농축산물판매액별 농가구성 비율

단위: %(호)

구 분	30-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500만원 미만	34.5	36.0	47.0	65.7
500-2000만원	30.4	33.6	38.0	28.8
2000-5000만원	23.1	22.4	12.8	4.8
5000만원 이상	12.0	8.1	2.2	0.7
	100 (204,352)	100 (275,342)	100 (396,109)	100 (276,721)

자료: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판매액이 없는 농가는 제외.

- 연령별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액 분석에서도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66% 가량이 500만원 미만의 영세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따

라서 고령화되어 갈수록 농가의 성격이 자급자족적 경영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의 정도에 따른 경지면적, 가족구성원 및 세대 구성, 농산물 판매액 등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령농가의 성격은 소규모 판매형과 자급자족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고령농가의 경제 상황

- 농가경제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고령농가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소득 및 가계비에 있어서는 30~40대와 50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소득은 30~40대가 가계비는 50대가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과 가계비 모두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70대 이상의 경우 농가소득이 2,063만원인 반면 가계비가 2,113만원으로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2-10. 경영주 연령별 소득 및 가계비

단위: 만원

구 분	30-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농가소득	4,294	4,273	3,253	2,063
농업소득	1,805	1,709	1,217	628
가계비	3,525	3,681	2,698	2,113

자료: 2006년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산술평균임.

- 농가의 소득 및 가계비를 보면, 고령농일수록 그리고 경지규모가 영세할수록 소득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가 중 경지면적 1ha 이하의 경우 농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ha 이상 경영체의 경우

급격한 농업소득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지면적별 소득 및 가계비 분석에서도 70대 이상, 1ha 미만 농가 계층에서 가계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2-11.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소득 및 가계비

단위: 만원

		30-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ha이하	농가소득	4,471	4,197	3,830	1,723
	농업소득	1,348	1,347	1,839	300
	가계비	3,450	3,442	2,785	1,953
1-3ha	농가소득	3,902	3,830	3,295	2,562
	농업소득	1,927	1,747	1,412	1,173
	가계비	3,518	3,456	2,528	2,194
3ha이상	농가소득	5,196	5,586	5,063	4,451
	농업소득	2,954	2,975	2,901	2,632
	가계비	3,707	4,445	3,446	2,481

자료: 2006년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 산술평균임.

- 영농형태별 소득 및 지출에서도 70대 이상 경영주의 경우 미작과 채소의 경우 지출이 소득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경영주 연령이 70대 이상의 영농형태를 보면 논벼가 56.2%, 채소가 16.3%, 밭작물이 13.4%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령농의 경우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작목전환이 현실적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령농가의 농업경영 실태를 보면, 대다수가 자급자족형 형태로 존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경영주 연령이 70대 이상이고,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가족농이며, 경지규모는 1ha 미만, 농축산물 판매액은 500만원 미만 수준인 자급자족적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영세고령농들은 대체로 논벼와 채소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경향임.

표 2-12. 경영주 연령별 영농형태별 소득 및 가계비

단위: 만원

구 분		30-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논벼	농가소득	4,268	4,035	3,099	2,079
	농업소득	1,094	1,056	902	581
	가계비	3,736	3,735	2,638	2,223
채소	농가소득	3,537	3,540	2,896	1,794
	농업소득	1,787	1,712	1,090	457
	가계비	3,431	3,206	2,688	2,112
과수	농가소득	4,832	4,615	3,901	2,400
	농업소득	1,848	1,734	1,635	1,117
	가계비	3,804	4,075	3,153	1,904
축산	농가소득	3,209	3,174	1,751	2,121
	농업소득	1,009	87	396	292
	가계비	2,834	4,002	1,729	1,884
기타	농가소득	5,052	5,745	4,219	2,275
	농업소득	2,798	3,123	2,347	979
	가계비	3,315	3,988	2,739	1,828

자료: 2006년 농가경제, 산술평균자료임

표 2-13. 경영주 연령별 영농형태별 농가구성 비율

단위: %

	30-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논벼	43.9	46.5	54.0	56.2
과수	12.6	13.2	11.3	8.9
특용	3.0	2.6	1.9	1.6
채소	19.9	19.4	17.5	16.3
화훼	1.6	1.1	0.5	0.3
전작	8.2	8.0	9.5	13.4
축산	10.5	8.8	5.0	3.3
기타	0.3	0.3	0.2	0.3
합계	100 (228,241)	100 (302,852)	100 (430,473)	100 (311,342)

자료: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 영세 고령농업인의 대부분은 현재 소득이 가계비 지출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가의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인해 농가경제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임.
-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고령이라는 인구학적 상황과 작목 전환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농업경제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영세 고령농업인은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누적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주체가 도시지역의 경제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고령영세농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은퇴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사회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농업의 내실 있는 구조조정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임.

제 3 장

고령농업인의 생활 실태와 의향

1. 조사 개요

- 고령농업인의 실태는 전국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업인 492명을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 면접설문조사는 농촌 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이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1,000명의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며,¹⁾ 이 가운데 농업인 492명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함.
- 이 조사는 전국의 137개 농촌 시·군을 농촌지역(시·군)의 특징을 나타내는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음.²⁾ 따라서 기존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대구분과는 지역유형별 특성이 다름.
 - 지역 유형은 관광부문이 성장하고 있는 산간·해안지역(이하 '산간·해안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인

1) 박대식·최경환. 2006. 「농촌 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유형 구분에 사용된 18개의 지표와 각 유형에 속하는 시·군은 박대식·최경환(2006)을 참조.

접 지역(이하 '도시 인접 지역'), 지역발전이 정체된 중산간 농업지역(이하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지대 농업 중심지역(이하 '평야 농업 중심지역')임.

-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 선정은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다단계 층화 표집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조사자 492명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4\%$ 임.

○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음.

표 3-1.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사례수	%
전 체		492	100
농업지대	산간/해안지역	53	10.8
	도시인접지역	127	25.8
	중산간 농업지역	196	39.8
	농업중심지역	116	23.6
성별	남	235	47.8
	여	257	52.2
가구 형태	노인가구	381	77.4
	노인/자녀가구	111	22.6
경영주 연령	65-70세 미만	181	36.8
	70-75세 미만	158	32.1
	75-80세 미만	89	18.1
	80-85세 미만	45	9.1
	85세 이상	19	3.9
최종 학력	무학	190	38.6
	초등졸업	189	38.4
	중학교 졸업	80	16.3
	고졸 이상	31	6.3
	무응답	2	0.4
혼인 상태	유 배우자	331	67.3
	사별	159	32.3
	별거 또는 이혼	2	0.4
	미혼	0	0.0
	기타	0	0.0
전겸업 형태	전업농가	416	84.6
	겸업농가	76	15.4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06.9). 이하 표에서 동일.

- 조사대상 농업인은 남자가 235명(47.8%), 여자가 257명(52.2%)으로 여자가 더 많이 선정되었음. 여자의 평균수명이 더 길어 여성노인들이 더 많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조사대상 농업인을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로 구성된 가구가 281명(77.4%)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는 111명(22.6%)임. 따라서 농촌의 고령농업인들 대다수가 배우자와 둘이서 혹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조사대상 농업인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79명(77.0%)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농업인의 전업 및 겸업 형태별 분포를 보면, 전업농가가 416명(84.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고령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영농규모를 확보하고 전업적으로 영농을 유지하고 있다기보다는 농사 이외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영세규모나마 농업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고령농업인의 가족 구성과 자산 상황

- 고령농업인의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는 2.2명이며, 가구원이 2명인 응답자가 5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구원이 1명인 응답자가 19.4%로써 76.8%가 2명 이하의 가구로써 고령농업인의 경우 배우자와 단둘이 살거나 홀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70.6%)가 많은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혼자 살고 있는 비율(31.1%)이 높게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있는 가구원수가 2.6명으로 80세 이하 연령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농업인들의 경우에 혼자 살기 어려워 동거가족이나 친지에게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 가구원수별 분포

단위: %, 명

	사례수	가 구 원 수						계	평균
		1	2	3	4	5	6		
전체	492	19.4	57.4	13.2	4.9	3.3	1.8	100.0	2.2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3.2	58.5	18.9	5.7	0.0	3.8	100.0	2.3
도시인접지역	127	18.9	56.7	8.7	5.5	8.7	1.6	100.0	2.3
중산간 농업지역	196	23.0	62.8	8.2	3.1	2.0	1.0	100.0	2.0
농업중심지역	116	22.4	51.7	17.2	5.2	2.6	0.9	100.0	2.2
성별									
남	235	9.4	70.6	11.5	5.1	1.7	1.7	100.0	2.2
여	257	31.1	46.7	11.7	3.9	5.4	1.2	100.0	2.1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26.8	71.1	2.1	0.0	0.0	0.0	100.0	1.8
노인/자녀가구	111	0.0	13.5	44.1	19.8	16.2	6.3	100.0	3.6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20.4	64.1	7.2	2.8	3.9	1.7	100.0	2.1
70-75세 미만	158	24.1	57.6	10.8	3.2	3.8	0.6	100.0	2.1
75-80세 미만	89	19.1	60.7	14.6	3.4	1.1	1.1	100.0	2.1
80-85세 미만	45	13.3	46.7	17.8	15.6	6.7	0.0	100.0	2.6
85세 이상	19	21.1	21.1	31.6	10.5	5.3	10.5	100.0	2.9
최종학력									
무학	190	24.7	48.9	13.7	5.8	5.8	1.1	100.0	2.2
초등 졸업	189	19.6	67.7	7.4	2.6	2.1	0.5	100.0	2.0
중학교 졸업	80	18.8	57.5	10.0	5.0	3.8	5.0	100.0	2.3
고졸 이상	16	20.2	61.9	16.1	1.8	0.0	0.0	100.0	2.0
무응답	2	0.0	50.0	0.0	50.0	0.0	0.0	100.0	3.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1.8	81.6	9.4	4.2	1.5	1.5	100.0	2.3
사별	159	59.1	10.1	16.4	5.0	8.2	1.3	100.0	2.0
별거 또는 이혼	2	100.0	0.0	0.0	0.0	0.0	0.0	100.0	1.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22.8	64.4	8.4	2.6	1.2	0.5	100.0	2.0
겸업농가	76	9.2	23.7	28.9	14.5	17.1	6.6	100.0	3.3

○ 농지는 호당 평균 0.68ha를 소유하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전업 농가가 겸업농가보다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음.

○ 저축은 호당 평균 333만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음.

표 3-3.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명

	사례수	농지 (ha)	주택 (㎡)	가축 (두)	농기계 (대)	저축 (만원)	자동차 (대)	기타재산 (만원)
전체	492	0.68	439.7	2.9	5.2	332.6	0.2	1.0
없음	345	344	32	443	428	251	435	485
있음	147	148	461	49	64	241	57	7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0.93	462.8	4.2	1.0	190.3	0.3	0.0
도시인접지역	127	0.47	509.1	1.8	10.4	379.5	0.2	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0.64	380.2	2.5	1.5	391.5	0.2	0.0
농업중심지역	116	0.88	443.0	4.4	7.7	246.6	0.3	4.3
성별								
남	235	0.84	472.7	4.0	3.3	447.3	0.3	2.1
여	257	0.54	406.6	2.0	6.9	227.6	0.2	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0.78	423.1	2.4	2.5	351.3	0.2	0.0
노인/자녀가구	289	0.53	353.7	2.7	6.8	268.3	0.4	4.5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0.75	419.8	3.1	2.8	346.5	0.3	0.0
70-75세 미만	158	0.67	456.2	2.7	11.6	296.4	0.2	0.0
75-80세 미만	89	0.46	446.3	1.2	1.9	320.7	0.1	0.0
80-85세 미만	45	0.80	439.7	1.5	1.1	538.7	0.4	11.1
85세 이상	19	0.86	426.4	14.1	0.4	68.4	0.4	0.0
최종학력								
무학	190	0.53	423.1	2.4	9.1	274.5	0.2	0.0
초등졸업	189	0.71	449.6	2.7	1.1	399.5	0.2	0.0
중학교 졸업	80	0.83	403.3	2.2	7.2	190.1	0.3	6.3
고졸 이상	16	1.93	502.5	18.5	1.0	948.1	0.4	0.0
무응답	2	0.36	654.5	0.5	2.0	500.0	0.0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0.78	456.2	3.4	3.5	398.4	0.2	1.5
사별	159	0.49	400.0	1.9	8.8	199.8	0.3	0.0
별거 또는 이혼	2	0.46	304.1	0.0	0.5	0.0	0.5	0.0
미혼	0	0.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0.71	443.0	2.8	6.0	341.0	0.2	1.2
겸업농가	76	0.52	403.3	3.8	0.8	286.5	0.5	0.0

표 3-4. 농지 소유 현황

단위: ha, 명

	사례수	계	논	밭	과수원	초지/임야	기타
전체	492	0.68	0.46	0.14	0.02	0.06	0.01
없음	344	344	112	182	478	467	479
있음	148	148	380	310	14	25	13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0.93	0.57	0.22	0.02	0.08	0.04
도시인접지역	127	0.47	0.31	0.11	0.01	0.04	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0.64	0.43	0.13	0.04	0.04	0.00
농업중심지역	116	0.88	0.60	0.18	0.01	0.09	0.01
성별							
남	235	0.84	0.52	0.18	0.03	0.11	0.01
여	257	0.54	0.40	0.12	0.01	0.01	0.01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0.78	0.57	0.15	0.01	0.04	0.01
노인/자녀가구	289	0.53	0.37	0.10	0.01	0.03	0.01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0.75	0.47	0.17	0.05	0.04	0.02
70-75세 미만	158	0.67	0.45	0.14	0.00	0.08	0.00
75-80세 미만	89	0.46	0.33	0.11	0.01	0.01	0.01
80-85세 미만	45	0.80	0.54	0.13	0.00	0.13	0.00
85세 이상	19	0.86	0.74	0.10	0.00	0.02	0.00
최종학력							
무학	190	0.53	0.36	0.11	0.04	0.02	0.00
초등 졸업	189	0.71	0.48	0.16	0.01	0.06	0.00
중학교 졸업	80	0.83	0.53	0.20	0.02	0.06	0.03
고졸 이상	16	1.93	0.47	0.21	0.00	1.23	0.02
무응답	2	0.36	0.33	0.03	0.00	0.00	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0.78	0.50	0.17	0.02	0.07	0.01
사별	159	0.49	0.36	0.08	0.01	0.04	0.00
별거 또는 이혼	2	0.46	0.43	0.03	0.00	0.00	0.00
미혼	0	0.00
기타	0	0.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0.71	0.48	0.15	0.02	0.06	0.01
겸업농가	76	0.52	0.33	0.13	0.02	0.03	0.00

- 고령농업인의 주택 면적은 평균 109.1㎡이며 대지는 평균 330.6㎡임.
도시인접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의 주택이 다른 지역 고령농업인의 주택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주택 소유 현황

단위: m², 명

	사례수	주택재산	건물면적	대지면적
전체	492	439.7	109.1	330.6
없음	32	32	32	31
있음	461	461	460	461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462.8	102.5	360.3
도시인접지역	127	509.1	145.5	363.6
중산간 농업지역	196	380.2	82.6	297.5
농업중심지역	116	443.0	112.4	330.6
성별				
남	235	472.7	112.4	363.6
여	257	406.6	105.8	300.8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423.1	99.2	324.0
노인/자녀가구	111	353.7	95.9	257.9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419.8	109.1	310.7
70-75세 미만	158	456.2	109.1	347.1
75-80세 미만	89	446.3	99.2	350.4
80-85세 미만	45	439.7	115.7	324.0
85세 이상	19	426.4	125.6	300.8
최종학력				
무학	190	423.1	102.5	317.4
초등 졸업	189	449.6	95.9	353.7
중학교 졸업	80	403.3	135.5	267.8
고졸 이상	31	502.5	138.8	366.9
무응답	2	654.5	76.0	578.5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456.2	115.7	343.8
사별	159	400.0	95.9	304.1
별거 또는 이혼	2	304.1	76.0	228.1
미혼	0	0.0	.	.
기타	0	0.0	.	.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443.0	105.8	340.5
겸업농가	76	403.3	125.6	277.7

- 가축은 평균 2.9두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우가 1.3두로 가장 많음. 한우는 고령농업인들이 소일 삼아 1~2마리를 부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6. 가축 소유 현황

단위: 두, 명

	사례수	계	한우	젓소	돼지	닭	개	기타
전체	492	2.9	1.3	0.0	0.1	0.7	0.6	0.3
없음	443	443	434	488	486	447	336	465
있음	49	49	58	4	6	45	156	27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4.2	1.8	0.0	0.0	0.8	0.6	0.9
도시인접지역	127	1.8	0.1	0.0	0.1	0.8	0.7	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2.5	1.0	0.0	0.0	0.8	0.5	0.2
농업중심지역	116	4.4	2.7	0.0	0.3	0.2	0.6	0.5
성별								
남	235	4.0	2.1	0.0	0.0	0.9	0.5	0.4
여	257	2.0	0.5	0.0	0.2	0.5	0.7	0.2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2.4	0.8	0.0	0.0	0.5	0.6	0.4
노인/자녀가구	111	2.7	1.8	0.0	0.2	0.2	0.4	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3.1	0.8	0.0	0.1	1.1	0.9	0.3
70-75세 미만	158	2.7	1.4	0.0	0.2	0.3	0.5	0.3
75-80세 미만	89	1.2	0.2	0.0	0.0	0.5	0.4	0.1
80-85세 미만	45	1.5	0.4	0.0	0.0	0.6	0.4	0.1
85세 이상	19	14.1	11.2	0.3	0.0	0.8	0.3	1.6
최종학력								
무학	190	2.4	1.0	0.0	0.2	0.4	0.4	0.3
초등 졸업	189	2.7	0.8	0.0	0.0	1.0	0.7	0.2
중학교 졸업	80	2.2	0.9	0.0	0.0	0.4	0.9	0.1
고졸 이상	31	18.5	15.4	0.1	0.0	0.5	2.0	0.5
무응답	2	0.5	0.0	0.5	0.0	0.0	0.0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3.4	1.7	0.0	0.0	0.8	0.6	0.3
사별	159	1.9	0.4	0.0	0.3	0.5	0.6	0.2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	0.0
기타	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2.8	1.1	0.0	0.1	0.7	0.6	0.3
겸업농가	76	3.8	2.2	0.1	0.0	0.5	0.7	0.3

- 고령농업인들의 농기계 보유율은 기종을 통틀어 5.2% 정도로 매우 낮으며, 보유 농기계의 기종을 보면 대체로 소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농기계 소유 현황

단위: 대, 명

	사례수	계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동력분 무기	기타
전체	492	5.2	0.1	0.1	0.4	0.1	0.1	0.1	4.3
없음	428	428	463	451	315	436	422	435	474
있음	64	64	29	41	177	56	70	57	18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0	0.0	0.1	0.3	0.2	0.2	0.1	0.0
도시인접지역	127	10.4	0.1	0.1	0.4	0.1	0.2	0.1	9.5
중산간 농업지역	196	1.5	0.1	0.1	0.4	0.2	0.1	0.1	0.5
농업중심지역	116	7.7	0.0	0.1	0.3	0.1	0.1	0.2	7.0
성별									
남	235	3.3	0.1	0.1	0.4	0.2	0.2	0.2	2.2
여	257	6.9	0.1	0.1	0.3	0.1	0.1	0.1	6.2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2.5	0.2	0.1	0.4	0.1	0.2	0.1	1.4
노인/자녀가구	111	6.8	0.1	0.1	0.3	0.1	0.1	0.1	6.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2.8	0.1	0.1	0.4	0.2	0.1	0.2	1.7
70-75세 미만	158	11.6	0.1	0.1	0.3	0.1	0.1	0.1	10.8
75-80세 미만	89	1.9	0.0	0.0	0.4	0.1	0.1	0.1	1.2
80-85세 미만	45	1.1	0.2	0.1	0.4	0.1	0.2	0.1	0.0
85세 이상	19	0.4	0.0	0.1	0.2	0.0	0.1	0.1	0.0
최종학력									
무학	190	9.1	0.1	0.1	0.3	0.0	0.1	0.1	8.4
초등 졸업	189	1.1	0.1	0.1	0.4	0.2	0.1	0.1	0.0
중학교 졸업	80	7.2	0.0	0.1	0.4	0.1	0.2	0.2	6.3
고졸 이상	31	1.0	0.0	0.1	0.4	0.1	0.1	0.3	0.1
무응답	2	2.0	0.0	0.0	1.0	0.5	0.0	0.5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3.5	0.1	0.1	0.4	0.2	0.2	0.1	2.5
사별	159	8.8	0.1	0.1	0.2	0.1	0.1	0.1	8.2
별거 또는 이혼	2	0.5	0.0	0.0	0.5	0.0	0.0	0.0	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6.0	0.1	0.1	0.4	0.1	0.1	0.1	5.1
겸업농가	76	0.8	0.1	0.1	0.3	0.1	0.1	0.1	0.0

- 고령농업인들의 농가에서는 승용차와 트럭 등의 자동차는 10가구에 1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자동차 소유 현황

단위: 대, 명

	사례수	계	승용차	트럭
전체	492	0.2	0.1	0.1
없음	435	435	430	440
있음	57	57	62	52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0.3	0.2	0.1
도시인접지역	127	0.2	0.2	0.1
중산간 농업지역	196	0.2	0.1	0.1
농업중심지역	116	0.3	0.1	0.2
성별				
남	235	0.3	0.1	0.1
여	257	0.2	0.1	0.1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0.2	0.1	0.1
노인/자녀가구	111	0.4	0.2	0.2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0.3	0.2	0.1
70-75세 미만	158	0.2	0.1	0.1
75-80세 미만	89	0.1	0.1	0.0
80-85세 미만	45	0.4	0.2	0.2
85세 이상	19	0.4	0.2	0.2
최종학력				
무학	190	0.2	0.1	0.1
초등 졸업	189	0.2	0.1	0.1
중학교 졸업	80	0.3	0.2	0.1
고졸 이상	31	0.4	0.4	0.0
무응답	2	0.0	0.0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0.2	0.1	0.1
사별	159	0.3	0.2	0.1
별거 또는 이혼	2	0.5	0.5	0.0
미혼	0	0.0	0	0
기타	0	0.0	0	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0.2	0.1	0.1
겸업농가	76	0.5	0.3	0.2

3. 고령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

- 고령농업인은 남자일수록, 노인가구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 농사일 참여 정도

단위: %, 명

	사례수	주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한다	주된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한다	과거에는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 않다	계
전체	492	48.4	27.5	9.4	13.5	1.2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39.6	41.5	3.8	13.2	1.9	100.0
도시인접지역	127	56.7	17.3	13.4	11.8	0.8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49.0	28.6	10.2	11.7	0.5	100.0
농업중심지역	116	48.3	22.4	10.3	17.2	1.7	100.0
성별							
남	235	57.9	20.4	8.5	13.2	0.0	100.0
여	257	42.4	30.4	12.1	13.2	1.9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58.5	27.8	8.1	5.5	0.0	100.0
노인/자녀가구	111	19.8	18.0	18.0	39.6	4.5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59.1	28.2	6.6	5.5	0.6	100.0
70-75세 미만	158	51.9	25.9	10.8	9.5	1.9	100.0
75-80세 미만	89	46.1	24.7	9.0	19.1	1.1	100.0
80-85세 미만	45	20.0	22.2	24.4	33.3	0.0	100.0
85세 이상	19	31.6	10.5	15.8	42.1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44.2	25.3	9.5	19.5	1.6	100.0
초등 졸업	189	55.6	24.9	10.6	7.9	1.1	100.0
중학교 졸업	80	46.3	30.0	11.3	12.5	0.0	100.0
고졸 이상	31	61.9	12.5	22.0	3.6	0.0	100.0
무응답	2	50.0	0.0	0.0	5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45.6	36.3	10.3	7.6	0.3	100.0
사별	159	57.9	3.8	10.7	25.2	2.5	100.0
별거 또는 이혼	2	100.0	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52.9	28.6	9.4	8.9	0.2	100.0
겸업농가	76	32.9	9.2	15.8	36.8	5.3	100.0

- 농사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사일 밖에 모르기 때문”이 5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즉, 농사 이외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0. 농사일 참여 이유

단위: %, 명

	사례수	돈이 필요해서	주말농업 수익을 위해서	농사일 밖에 모르기 때문에	취미 또는 일거리	건강을 유지하 기 위해서	일손이 모자라서
전체	422	25.8	6.5	56.6	7.6	1.0	2.4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45	31.1	15.6	40.0	8.9	0.0	4.4
도시인접지역	111	15.3	4.5	64.9	9.9	1.8	3.6
중산간 농업지역	172	18.6	2.9	71.5	4.1	1.2	1.7
농업중심지역	94	38.3	3.2	50.0	7.4	1.1	0.0
성별							
남	204	21.6	6.4	63.7	6.4	1.0	1.0
여	218	25.2	3.2	59.6	7.3	1.4	3.2
가구형태							
노인가구	360	25.0	4.7	61.9	6.7	0.8	0.8
노인/자녀가구	62	14.5	4.8	59.7	8.1	3.2	9.7
연령대							
65-70세 미만	170	24.1	6.5	60.0	6.5	0.6	2.4
70-75세 미만	140	24.3	5.0	63.6	5.7	0.7	0.7
75-80세 미만	71	22.5	2.8	64.8	7.0	1.4	1.4
80-85세 미만	30	20.0	0.0	56.7	13.3	3.3	6.7
85세 이상	11	18.2	0.0	54.5	9.1	9.1	9.1
최종학력							
무학	150	27.3	0.7	64.7	2.0	2.0	3.3
초등 졸업	172	24.4	4.7	60.5	8.1	0.6	1.7
중학교 졸업	70	18.6	4.3	62.9	12.9	0.0	1.4
고졸이상	29	5.8	44.9	26.9	20.5	1.9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05	23.0	4.9	63.9	5.9	0.7	1.6
사별	115	24.3	4.3	55.7	9.6	2.6	3.5
별거 또는 이혼	2	50.0	0.0	50.0	0.0	0.0	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378	24.6	4.8	62.4	6.1	0.8	1.3
겸업농가	44	13.6	4.5	54.5	13.6	4.5	9.1

- 대다수의 고령농업인들은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는 농사 이외의 마땅한 생활비 확보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3-11. 금후 영농 지속 의사

단위: %, 명

	사례수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	10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5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3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422	85.4	0.1	2.6	5.4	6.6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45	91.1	0.0	0.0	6.7	2.2	100.0
도시인접지역	111	88.3	0.0	1.8	1.8	8.1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72	80.2	0.6	5.2	8.7	5.2	100.0
농업중심지역	94	81.9	0.0	3.2	4.3	10.6	100.0
성별							
남	204	84.8	0.5	2.0	3.9	8.8	100.0
여	218	83.0	0.0	4.6	7.3	5.0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60	85.0	0.3	3.3	5.8	5.6	100.0
노인/자녀가구	62	77.4	0.0	3.2	4.8	14.5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70	89.4	0.6	2.4	2.9	4.7	100.0
70-75세 미만	140	84.3	0.0	4.3	3.6	7.9	100.0
75-80세 미만	71	67.6	0.0	4.2	16.9	11.3	100.0
80-85세 미만	30	90.0	0.0	3.3	3.3	3.3	100.0
85세 이상	11	81.8	0.0	0.0	9.1	9.1	100.0
최종학력							
무학	150	84.0	0.0	4.0	6.7	5.3	100.0
초등 졸업	172	80.8	0.6	4.1	7.0	7.6	100.0
중학교 졸업	70	92.9	0.0	0.0	2.9	4.3	100.0
고졸 이상	29	90.4	0.0	0.0	0.0	9.6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05	82.3	0.3	3.0	5.9	8.5	100.0
사별	115	87.8	0.0	4.3	5.2	2.6	100.0
별거 또는 이혼	2	100.0	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378	84.1	0.3	3.7	5.8	6.1	100.0
겸업농가	44	81.8	0.0	0.0	4.5	13.6	100.0

- 조사대상 고령농업인들의 93%는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령농업인들이 참여할 만한 농외소득 활동기회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으나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것도 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됨.

표 3-12. 농외소득 활동 참여 여부

단위: %, 명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492	6.9	93.1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7.5	92.5	100.0
도시인접지역	127	7.1	92.9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5.6	94.4	100.0
농업중심지역	116	8.6	91.4	100.0
성별				
남	235	8.5	91.5	100.0
여	257	5.4	94.6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6.8	93.2	100.0
노인/자녀가구	111	7.2	92.8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10.5	89.5	100.0
70-75세 미만	158	5.7	94.3	100.0
75-80세 미만	89	4.5	95.5	100.0
80-85세 미만	45	2.2	97.8	100.0
85세 이상	19	5.3	94.7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5.8	94.2	100.0
초등 졸업	189	6.3	93.7	100.0
중학교 졸업	80	8.8	91.3	100.0
고졸 이상	31	7.1	92.9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6.9	93.1	100.0
사별	159	6.3	93.7	100.0
별거 또는 이혼	2	50.0	50.0	100.0
미혼	0	0.0	0.0	0.0
기타	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2.6	97.4	100.0
겸업농가	76	30.3	69.7	100.0

-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농업인들의 82%는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농외소득 활동 참여 이유

단위: %, 명

	사례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아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계
전체	34	82.4	2.9	11.8	0.0	0.0	2.9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4	100.0	0.0	0.0	0.0	0.0	0.0	100.0
도시인접지역	9	55.6	11.1	33.3	0.0	0.0	0.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1	100.0	0.0	0.0	0.0	0.0	0.0	100.0
농업중심지역	10	80.0	0.0	10.0	0.0	0.0	10.0	100.0
성별								
남	20	85.0	0.0	15.0	0.0	0.0	0.0	100.0
여	14	78.6	7.1	7.1	0.0	0.0	7.1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26	76.9	3.8	15.4	0.0	0.0	3.8	100.0
노인/자녀가구	8	100.0	0.0	0.0	0.0	0.0	0.0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9	73.7	5.3	21.1	0.0	0.0	0.0	100.0
70-75세 미만	9	88.9	0.0	0.0	0.0	0.0	11.1	100.0
75-80세 미만	4	100.0	0.0	0.0	0.0	0.0	0.0	100.0
80-85세 미만	1	100.0	0.0	0.0	0.0	0.0	0.0	100.0
85세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1	90.9	9.1	0.0	0.0	0.0	0.0	100.0
초등 졸업	12	100.0	0.0	0.0	0.0	0.0	0.0	100.0
중학교 졸업	7	57.1	0.0	28.6	0.0	0.0	14.3	100.0
고졸 이상	4	50.0	0.0	50.0	0.0	0.0	0.0	100.0
무응답	0	0.0	0.0	0.0	0.0	0.0	0.0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23	82.6	0.0	17.4	0.0	0.0	0.0	100.0
사별	10	80.0	10.0	0.0	0.0	0.0	10.0	100.0
별거 또는 이혼	1	100.0	0.0	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11	100.0	0.0	0.0	0.0	0.0	0.0	100.0
겸업농가	23	73.9	4.3	17.4	0.0	0.0	4.3	100.0

- 농외소득 활동에 참가하는 고령농업인들의 월평균 수입은 67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수입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은 경향임. 또한 배우자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경우에 수입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표 3-14. 월 평균 수입(농외소득활동 참가자)

단위: %, 명, 만원

	사례수	30미만	30-60	60-90	90이상	계	평균
전체	33	30.3	24.2	18.2	27.3	100.0	67.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4	0.0	25.0	25.0	50.0	100.0	80.0
도시인접지역	8	25.0	0.0	37.5	37.5	100.0	76.3
중산간 농업지역	11	45.5	45.5	0.0	9.1	100.0	31.4
농업중심지역	10	30.0	20.0	20.0	30.0	100.0	80.3
성별							
남	20	30.0	15.0	20.0	35.0	100.0	71.7
여	13	30.8	38.5	15.4	15.4	100.0	49.6
가구형태							
노인가구	25	28.0	28.0	24.0	20.0	100.0	62.3
노인/자녀가구	8	37.5	12.5	0.0	50.0	100.0	65.0
연령대							
65-70세 미만	18	5.6	27.8	27.8	38.9	100.0	86.7
70-75세 미만	9	55.6	22.2	11.1	11.1	100.0	35.0
75-80세 미만	4	75.0	0.0	0.0	25.0	100.0	38.8
80-85세 미만	1	0.0	100.0	0.0	0.0	100.0	30.0
85세 이상	1	100.0	0.0	0.0	0.0	100.0	18.0
최종학력							
무학	10	50.0	40.0	0.0	10.0	100.0	35.0
초등 졸업	12	25.0	25.0	25.0	25.0	100.0	60.4
중학교 졸업	7	14.3	14.3	42.9	28.6	100.0	65.0
고졸 이상	4	25.0	0.0	0.0	75.0	100.0	137.0
무응답	0	0.0	0.0	0.0	0.0	0.0	.
혼인상태							
유배우자	23	13.0	30.4	26.1	30.4	100.0	72.8
사별	9	77.8	11.1	0.0	11.1	100.0	33.7
별거 또는 이혼	1	0.0	0.0	0.0	100.0	10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
기타	0	0.0	0.0	0.0	0.0	0.0	.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11	27.3	36.4	9.1	27.3	100.0	54.8
겸업농가	22	31.8	18.2	22.7	27.3	100.0	67.0

표 3-15. 농외소득활동 미참여 이유(농외소득활동 미 참여자)

단위: %, 명

	사례 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일 할 필요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 또는 가족수 발 때문에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타	계
전체	458	0.4	22.9	0.9	8.7	12.4	3.1	2.8	48.3	0.4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49	2.0	38.8	0.0	14.3	20.4	4.1	2.0	18.4	0.0	100.0
도시인접지역	118	0.0	22.9	2.5	12.7	8.5	6.8	3.4	43.2	0.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85	0.0	23.8	0.5	3.8	12.4	2.2	4.3	53.0	0.0	100.0
농업중심지역	106	0.9	14.2	0.0	10.4	13.2	0.0	0.0	59.4	1.9	100.0
성별											
남	215	0.5	29.3	0.9	8.4	7.9	1.4	2.3	48.8	0.5	100.0
여	243	0.4	17.3	0.8	9.1	16.5	4.5	3.3	47.7	0.4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55	0.3	26.8	0.8	9.3	10.7	2.5	2.8	46.5	0.3	100.0
노인/자녀가구	103	1.0	9.7	1.0	6.8	18.4	4.9	2.9	54.4	1.0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62	0.6	32.7	1.2	13.6	13.0	4.3	2.5	31.5	0.6	100.0
70-75세 미만	149	0.7	20.1	0.7	8.1	10.7	4.0	2.0	53.7	0.0	100.0
75-80세 미만	85	0.0	18.8	1.2	4.7	15.3	1.2	3.5	54.1	1.2	100.0
80-85세 미만	44	0.0	9.1	0.0	2.3	11.4	0.0	6.8	70.5	0.0	100.0
85세 이상	18	0.0	11.1	0.0	5.6	11.1	0.0	0.0	72.2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79	1.1	21.8	0.6	5.0	14.5	2.2	2.8	52.0	0.0	100.0
초등 졸업	177	0.0	25.4	0.0	9.6	13.0	2.3	4.0	45.8	0.0	100.0
중학교 졸업	73	0.0	13.7	1.4	13.7	5.5	6.8	0.0	57.5	1.4	100.0
고졸 이상	27	0.0	37.5	18.8	6.3	8.3	2.1	2.1	25.0	0.0	100.0
무응답	2	0.0	0.0	0.0	50.0	0.0	0.0	0.0	0.0	5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08	0.6	26.9	0.3	10.1	11.0	2.6	3.6	44.8	0.0	100.0
사별	149	0.0	14.8	2.0	6.0	14.8	4.0	1.3	55.7	1.3	100.0
별거 또는 이혼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05	0.5	25.2	0.7	8.4	11.1	2.7	2.5	48.6	0.2	100.0
겸업농가	53	0.0	5.7	1.9	11.3	22.6	5.7	5.7	45.3	1.9	100.0

○ 고령농업인들이 농사일 이외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가 4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22.9%), “건강이 좋지 않아서”(12.4%)의 순서임. 즉, 농외소득 활동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건강이나 고령으로 인해 농사일만으로도 힘에 겨운 것을 알 수 있음.

- 조사 대상의 90% 정도가 앞으로도 농사 이외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함.

표 3-16. 향후 농외소득활동 참여 의사(농외소득활동 미 참여자)

단위: %, 명

	사례수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할 수 없다	무응답	계
전체	458	6.1	25.1	64.8	3.9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49	14.3	42.9	42.9	0.0	100.0
도시인접지역	118	5.1	31.4	62.7	0.8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85	3.2	28.6	64.3	3.8	100.0
농업중심지역	106	8.5	3.8	78.3	9.4	100.0
성별						
남	215	7.0	25.6	62.3	5.1	100.0
여	243	5.3	24.7	67.1	2.9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55	5.6	26.5	63.7	4.2	100.0
노인/자녀가구	103	7.8	20.4	68.9	2.9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62	9.9	28.4	58.6	3.1	100.0
70-75세 미만	149	6.7	25.5	63.1	4.7	100.0
75-80세 미만	85	1.2	27.1	64.7	7.1	100.0
80-85세 미만	44	2.3	11.4	86.4	0.0	100.0
85세 이상	18	0.0	16.7	83.3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79	4.5	25.1	63.1	7.3	100.0
초등 졸업	177	5.6	29.9	63.8	0.6	100.0
중학교 졸업	73	8.2	12.3	76.7	2.7	100.0
고졸 이상	27	8.3	45.8	41.7	4.2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08	5.5	26.9	63.6	3.9	100.0
사별	149	6.7	21.5	67.8	4.0	100.0
별거 또는 이혼	1	10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05	5.4	25.7	64.7	4.2	100.0
겸업농가	53	11.3	20.8	66.0	1.9	100.0

- 2005년도의 평균 소득은 1,054만원으로써 근로소득이 828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적 이전소득(111만원)임. 남자가 여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으며, 주로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함. 또한 겸업농가의 소득이 전업농가의 소득보다 약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7. 소득원별 가구소득(2005년)

단위: 만원, 명

	사례수	계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전체	492	1,054	828	82	33	111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749	543	102	20	83
도시인접지역	127	1,521	1,233	94	27	167
중산간 농업지역	196	848	652	60	45	91
농업중심지역	116	1,027	809	95	25	97
성별						
남	235	1,231	967	112	37	114
여	257	890	699	54	29	108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847	616	81	33	116
노인/자녀가구	111	1,761	1,553	84	31	92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1,286	1,058	110	28	90
70-75세 미만	158	831	637	66	27	101
75-80세 미만	89	867	599	57	59	150
80-85세 미만	45	1,252	1,016	91	27	118
85세 이상	19	1,085	836	36	17	195
최종학력						
무학	190	1,101	892	49	37	122
초등 졸업	189	919	701	63	36	118
중학교 졸업	80	1,086	902	76	21	87
고졸 이상	31	1,281	630	537	17	98
무응답	2	1,513	1,500	0	13	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1,105	879	93	34	99
사별	159	948	720	60	30	137
별거 또는 이혼	2	861	850	0	11	0
미혼	0
기타	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967	745	76	32	114
겸업농가	76	1,523	1,278	111	38	96

- 남자가 여자보다 근로소득이 많은 것은 농업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함.
농업이외 근로소득은 여자가 남자보다도 높은데도 농업소득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임.

표 3-18. 근로소득 현황

단위: 만원, 명

	사례수	근로소득 계	농업소득	농업 이외 근로소득
전체	492	827.6	663.4	164.2
없다	227	227	45	409
있다	265	265	447	83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543.6	351.5	192.1
도시인접지역	127	1,233.4	991.8	241.6
중산간 농업지역	196	652.0	523.2	128.9
농업중심지역	116	809.8	683.3	126.5
성별				
남	235	967.8	833.9	133.9
여	257	699.4	507.4	192.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616.2	550.8	65.4
노인/자녀가구	111	1,553.3	1,050.0	503.2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1,058.1	853.3	204.8
70-75세 미만	158	637.1	536.9	100.3
75-80세 미만	89	599.7	520.2	79.4
80-85세 미만	45	1,016.4	653.3	363.1
85세 이상	19	836.1	601.1	235.1
최종학력				
무학	190	892.7	703.4	189.3
초등 졸업	189	701.3	553.7	147.6
중학교 졸업	80	902.1	776.4	125.8
고졸 이상	31	629.9	507.1	122.8
무응답	2	1,500.0	1,500.0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879.1	744.1	135.0
사별	159	720.2	500.7	219.5
별거 또는 이혼	2	850.0	250.0	600.0
미혼	0	0.0	.	.
기타	0	0.0	.	.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745.3	690.5	54.7
겸업농가	76	1,278.4	514.8	763.6

- 노인가구보다는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 자녀들이 농외 취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3-19. 자산소득 현황

단위: 만원, 명

	사례수	자산소득계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자산소득
전체	492	82.1	11.9	6.8	63.4
없다	430	430	452	481	356
있다	62	62	40	11	136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02.5	7.1	0.0	95.4
도시인접지역	127	94.6	11.1	20.1	63.4
중산간 농업지역	196	60.4	5.9	1.9	52.6
농업중심지역	116	95.7	25.0	3.6	67.1
성별					
남	235	112.5	18.9	10.4	83.2
여	257	54.2	5.4	3.5	45.3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81.3	14.8	5.6	60.9
노인/자녀가구	111	84.8	1.6	11.1	72.2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110.2	17.2	12.9	80.0
70-75세 미만	158	66.3	9.1	3.1	54.2
75-80세 미만	89	57.9	5.2	5.8	47.0
80-85세 미만	45	91.2	16.0	0.0	75.2
85세 이상	19	36.8	5.3	0.0	31.6
최종학력					
무학	190	49.8	4.1	1.9	43.9
초등 졸업	189	63.1	8.0	3.7	51.4
중학교 졸업	80	76.3	1.3	20.0	55.0
고졸 이상	31	536.7	135.9	12.5	388.4
무응답	2	0.0	0.0	0.0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93.1	14.0	7.4	71.8
사별	159	60.1	7.6	5.7	46.8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0.0
미혼	0	0.0	.	.	.
기타	0	0.0	.	.	.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76.6	13.7	5.4	57.6
겸업농가	76	111.8	2.0	14.5	95.4

- 연간 소득 수준에 대하여 71.2%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 만족도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특이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음. 다만 학력이 높은 계층이 소득 수준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0. 소득 만족도

단위: %, 명

	사례 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종합			계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전체	492	0.2	7.1	21.5	30.5	40.7	7.3	21.5	71.2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0.0	3.8	20.8	28.3	47.2	3.8	20.8	75.5	100.0
도시인접지역	127	0.8	7.1	29.9	29.9	32.3	7.9	29.9	62.2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0.0	8.7	25.0	31.6	34.7	8.7	25.0	66.3	100.0
농업중심지역	116	0.0	6.0	6.9	30.2	56.9	6.0	6.9	87.1	100.0
성별										
남	235	0.0	10.6	20.0	28.9	40.4	10.6	20.0	69.4	100.0
여	257	0.4	3.9	23.0	31.9	40.9	4.3	23.0	72.8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0.3	7.6	20.2	32.5	39.4	7.9	20.2	71.9	100.0
노인/자녀가구	111	0.0	5.4	26.1	23.4	45.0	5.4	26.1	68.5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0.0	5.5	24.9	33.1	36.5	5.5	24.9	69.6	100.0
70-75세 미만	158	0.6	7.0	18.4	32.3	41.8	7.6	18.4	74.1	100.0
75-80세 미만	89	0.0	10.1	18.0	22.5	49.4	10.1	18.0	71.9	100.0
80-85세 미만	45	0.0	11.1	26.7	28.9	33.3	11.1	26.7	62.2	100.0
85세 이상	19	0.0	0.0	21.1	31.6	47.4	0.0	21.1	78.9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0.0	7.4	24.7	34.7	33.2	7.4	24.7	67.9	100.0
초등 졸업	189	0.5	6.9	23.3	34.9	34.4	7.4	23.3	69.3	100.0
중학교 졸업	80	0.0	2.5	17.5	13.8	66.3	2.5	17.5	80.0	100.0
고졸 이상	31	0.0	19.4	3.2	19.4	58.1	19.4	3.2	77.4	100.0
무응답	2	0.0	0.0	0.0	50.0	50.0	0.0	0.0	10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0.0	7.6	20.2	30.8	41.4	7.6	20.2	72.2	100.0
사별	159	0.6	6.3	24.5	29.6	39.0	6.9	24.5	68.6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50.0	50.0	0.0	0.0	10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0.2	7.0	21.2	30.8	40.9	7.2	21.2	71.6	100.0
겸업농가	76	0.0	7.9	23.7	28.9	39.5	7.9	23.7	68.4	100.0

- 연간 사적 이전소득 수준은 평균 68만원 정도임. 사적 이전소득이 없는 경우가 35.2%나 차지하는 반면, 200만원 이상도 6.2%나 됨. 따라서 고령농업인간에 사적이전소득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3-21. 사적 이전소득 수준(2005년)

단위: %, 명

	사례수	없음	50만원 미만	50-100	100-200	200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355	35.2	37.5	12.1	9.0	6.2	100.0	68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42	26.2	66.7	7.1	0.0	0.0	100.0	29
도시인접지역	103	27.2	28.2	23.3	14.6	6.8	100.0	72
중산간 농업지역	133	39.8	45.1	4.5	3.0	7.5	100.0	63
농업중심지역	77	42.9	20.8	13.0	16.9	6.5	100.0	95
성별								
남	171	32.7	30.4	15.2	12.9	8.8	100.0	81
여	184	37.5	44.0	9.2	5.4	3.8	100.0	56
가구형태								
노인가구	271	33.6	36.2	12.2	11.1	7.0	100.0	71
노인/자녀가구	84	40.5	41.7	11.9	2.4	3.6	100.0	61
연령대								
65-70세 미만	144	34.0	38.2	11.8	9.7	6.3	100.0	73
70-75세 미만	106	33.0	40.6	11.3	8.5	6.6	100.0	71
75-80세 미만	61	36.1	32.8	11.5	11.5	8.2	100.0	72
80-85세 미만	30	33.3	36.7	20.0	6.7	3.3	100.0	54
85세 이상	14	64.3	28.6	7.1	0.0	0.0	100.0	19
최종학력								
무학	141	37.6	42.6	12.8	2.1	5.0	100.0	59
초등 졸업	133	36.1	31.6	12.8	12.8	6.8	100.0	63
중학교 졸업	54	25.9	42.6	11.1	13.0	7.4	100.0	104
고졸 이상	25	67.4	13.0	4.3	10.9	4.3	100.0	85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40
혼인상태								
유배우자	238	33.6	35.7	12.2	10.9	7.6	100.0	74
사별	115	39.1	40.0	12.2	5.2	3.5	100.0	58
별거 또는 이혼	2	0.0	100.0	0.0	0.0	0.0	100.0	20
미혼	0	0.0	0.0	0.0	0.0	0.0	0.0	.
기타	0	0.0	0.0	0.0	0.0	0.0	0.0	.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293	33.1	38.6	11.6	9.6	7.2	100.0	74
겸업농가	62	45.2	32.3	14.5	6.5	1.6	100.0	41

- 생활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마련하거나 일부만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고령농업인이 71.9%를 차지하며, 대다수 고령농업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2.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사례 수	전액 스스로 마련한다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고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보조	일부만 스스로 마련하고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보조	거의 대부분 정부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마련	기타	계
전체	492	45.3	26.6	13.8	3.0	11.2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56.6	17.0	15.1	5.7	5.7	100.0
도시인접지역	127	40.2	37.8	9.4	1.6	11.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44.9	20.4	15.8	4.6	14.3	100.0
농업중심지역	116	46.6	29.3	14.7	0.9	8.6	100.0
성별							
남	235	49.4	25.5	10.2	1.7	13.2	100.0
여	257	41.6	27.6	17.1	4.3	9.3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46.5	28.3	11.0	3.1	11.0	100.0
노인/자녀가구	111	41.4	20.7	23.4	2.7	11.7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51.9	26.0	10.5	2.2	9.4	100.0
70-75세 미만	158	45.6	25.9	12.7	3.8	12.0	100.0
75-80세 미만	89	34.8	27.0	18.0	4.5	15.7	100.0
80-85세 미만	45	37.8	35.6	15.6	2.2	8.9	100.0
85세 이상	19	47.4	15.8	31.6	0.0	5.3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40.0	22.6	20.5	5.8	11.1	100.0
초등 졸업	189	47.1	25.4	11.1	1.1	15.3	100.0
중학교 졸업	80	46.3	42.5	6.3	1.3	3.8	100.0
고졸 이상	31	65.5	10.7	18.5	1.8	3.6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50.2	25.7	12.1	1.8	10.3	100.0
사별	159	35.2	28.3	17.6	5.7	13.2	100.0
별거 또는 이혼	2	50.0	5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45.2	28.4	13.7	2.6	10.1	100.0
겸업농가	76	46.1	17.1	14.5	5.3	17.1	100.0

표 3-23. 월평균 생활비

단위: %, 만원, 명

	사례수	20만원 미만	20-40	40-60	60-80	80-100	100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486	1.6	24.1	31.1	14.4	20.4	8.4	100.0	64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2	3.8	28.8	26.9	13.5	19.2	7.7	100.0	60
도시인접지역	127	0.8	13.4	38.6	16.5	18.9	11.8	100.0	71
중산간 농업지역	191	2.1	33.5	29.3	15.7	14.1	5.2	100.0	54
농업중심지역	116	0.9	18.1	27.6	10.3	32.8	10.3	100.0	74
성별									
남	230	0.9	18.7	29.6	18.7	24.8	7.4	100.0	67
여	256	2.3	28.9	32.4	10.5	16.4	9.4	100.0	61
가구형태									
노인가구	375	1.6	29.3	34.9	14.7	15.5	4.0	100.0	55
노인/자녀가구	111	1.8	6.3	18.0	13.5	36.9	23.4	100.0	94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1.1	24.3	29.8	13.8	22.1	8.8	100.0	65
70-75세 미만	154	2.6	26.0	31.2	14.3	18.2	7.8	100.0	61
75-80세 미만	87	0.0	26.4	37.9	14.9	13.8	6.9	100.0	58
80-85세 미만	45	4.4	20.0	22.2	15.6	24.4	13.3	100.0	73
85세 이상	19	0.0	5.3	31.6	15.8	42.1	5.3	100.0	75
최종학력									
무학	187	3.2	34.2	29.9	10.2	12.3	10.2	100.0	59
초등 졸업	188	0.5	22.9	34.0	19.7	17.0	5.9	100.0	61
중학교 졸업	79	0.0	12.7	31.6	10.1	36.7	8.9	100.0	73
고졸 이상	30	1.9	0.0	24.1	9.3	42.6	22.2	100.0	95
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100.0	60
혼인상태									
유배우자	325	1.5	20.0	30.8	16.9	23.7	7.1	100.0	65
사별	159	1.9	32.1	32.1	9.4	13.8	10.7	100.0	62
별거 또는 이혼	2	0.0	50.0	0.0	0.0	0.0	50.0	100.0	75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0	1.5	25.6	34.4	14.6	17.8	6.1	100.0	60
겸업농가	76	2.6	15.8	13.2	13.2	34.2	21.1	100.0	86

- 고령 농업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64만원이며, 노인가구에 비해 자녀동거가구의 생활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겸업농가일수록 생활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졸 이상의 학력 계층의 생활비가 95만원 정도로 타 계층에 비

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수준이 더 높아 소득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지출은 주거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보건의료비, 식비 등의 순서임.

표 3-24. 가장 부담이 큰 지출 항목

단위: %, 명

	사례 수	식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여가활동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기타	계
전체	492	15.9	12.0	25.0	1.0	34.6	4.1	2.4	4.1	1.0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1.3	11.3	28.3	0.0	26.4	7.5	1.9	9.4	3.8	100.0
도시인접지역	127	28.3	15.7	11.0	1.6	35.4	2.4	2.4	3.1	0.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12.2	8.7	35.7	1.0	31.6	3.1	3.6	2.6	1.5	100.0
농업중심지역	116	10.3	13.8	20.7	0.9	42.2	6.0	0.9	5.2	0.0	100.0
성별											
남	235	12.8	16.6	23.8	1.7	36.2	3.0	2.1	1.7	2.1	100.0
여	257	18.7	7.8	26.1	0.4	33.1	5.1	2.7	6.2	0.0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15.0	13.9	28.1	1.3	32.5	0.5	2.6	4.7	1.3	100.0
노인/자녀가구	111	18.9	5.4	14.4	0.0	41.4	16.2	1.8	1.8	0.0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14.9	17.1	18.2	1.7	37.6	2.2	2.2	5.0	1.1	100.0
70-75세 미만	158	15.8	9.5	27.2	1.3	34.2	5.7	1.9	3.8	0.6	100.0
75-80세 미만	89	16.9	12.4	38.2	0.0	24.7	4.5	1.1	1.1	1.1	100.0
80-85세 미만	45	20.0	2.2	24.4	0.0	40.0	4.4	4.4	4.4	0.0	100.0
85세 이상	19	10.5	5.3	10.5	0.0	42.1	5.3	10.5	10.5	5.3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19.5	7.9	28.4	1.1	33.7	5.3	1.6	2.1	0.5	100.0
초등 졸업	189	15.9	12.2	27.0	1.1	31.2	2.6	3.2	4.8	2.1	100.0
중학교 졸업	80	11.3	13.8	12.5	0.0	47.5	3.8	3.8	7.5	0.0	100.0
고졸 이상	31	18.5	47.6	14.3	1.8	14.3	1.8	0.0	1.8	0.0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13.3	13.6	27.5	1.5	34.4	1.8	2.7	3.6	1.5	100.0
사별	159	21.4	8.8	19.5	0.0	34.6	8.8	1.9	5.0	0.0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14.2	12.5	26.4	1.0	34.6	2.9	2.6	4.6	1.2	100.0
겸업농가	76	25.0	9.2	17.1	1.3	34.2	10.5	1.3	1.3	0.0	100.0

표 3-25. 부채 현황

단위: %, 명

	사례수	없음	500만 원 미만	500 ~ 1000만 원	1000 ~ 2000만 원	2000 ~ 3000만 원	3000 ~ 5000만 원	5000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전체	492	75.8	6.7	5.5	6.1	2.6	1.8	0.8	0.6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69.8	0.0	5.7	17.0	1.9	3.8	1.9	0.0	100.0
도시인접지역	127	79.5	6.3	5.5	4.7	1.6	2.4	0.0	0.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78.6	8.2	6.1	2.6	2.6	0.5	1.0	0.5	100.0
농업중심지역	116	69.8	7.8	4.3	8.6	4.3	2.6	0.9	1.7	100.0
성별										
남	235	74.9	5.5	6.0	7.7	2.1	2.1	0.9	0.9	100.0
여	257	76.7	7.8	5.1	4.7	3.1	1.6	0.8	0.4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78.2	6.8	5.2	5.8	1.3	1.3	0.8	0.5	100.0
노인/자녀가구	111	67.6	6.3	6.3	7.2	7.2	3.6	0.9	0.9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71.3	9.9	7.7	5.5	2.8	1.1	1.1	0.6	100.0
70-75세 미만	158	77.8	3.2	3.8	8.9	1.3	2.5	1.3	1.3	100.0
75-80세 미만	89	73.0	10.1	5.6	5.6	4.5	1.1	0.0	0.0	100.0
80-85세 미만	45	88.9	2.2	0.0	0.0	4.4	4.4	0.0	0.0	100.0
85세 이상	19	84.2	0.0	10.5	5.3	0.0	0.0	0.0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76.8	6.8	5.3	6.3	2.6	1.6	0.5	0.0	100.0
초등 졸업	189	75.1	7.9	5.8	6.3	2.6	1.6	0.5	0.0	100.0
중학교 졸업	80	75.0	5.0	3.8	7.5	1.3	2.5	1.3	3.8	100.0
고졸 이상	31	87.5	1.8	3.6	0.0	3.6	1.8	1.8	0.0	10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74.0	7.6	6.9	6.0	1.8	1.8	1.2	0.6	100.0
사별	159	80.5	5.0	2.5	5.0	4.4	1.9	0.0	0.6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76.7	6.3	5.8	5.8	2.4	1.7	0.7	0.7	100.0
겸업농가	76	71.1	9.2	3.9	7.9	3.9	2.6	1.3	0.0	100.0

- 고령농업인 대다수가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다만 1억원 이

상의 부채가 있는 고령농업인은 농업중심지역의 전업농가에 해당되는데, 영농을 위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나 영농자금으로 인한 부채라고 짐작됨. 부채의 원인은 영농자금으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고(72.3%), 주택자금(7.6%), 생활비(5.0%)의 순서임.

표 3-26. 부채의 주요 원인

단위: %, 명

	사례수	영농자금	주택 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사업 자금	관혼 상제비	자녀 지원	계
전체	119	72.3	7.6	4.2	3.4	5.0	3.4	3.4	0.8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16	62.5	12.5	6.3	6.3	0.0	6.3	0.0	6.3	100.0
도시인접지역	26	80.8	11.5	3.8	0.0	0.0	0.0	3.8	0.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42	69.0	4.8	2.4	2.4	11.9	4.8	4.8	0.0	100.0
농업중심지역	35	74.3	5.7	5.7	5.7	2.9	2.9	2.9	0.0	100.0
성별										
남	59	69.5	8.5	3.4	5.1	5.1	3.4	3.4	1.7	100.0
여	60	75.0	6.7	5.0	1.7	5.0	3.3	3.3	0.0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83	69.9	6.0	6.0	3.6	4.8	4.8	3.6	1.2	100.0
노인/자녀가구	36	77.8	11.1	0.0	2.8	5.6	0.0	2.8	0.0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52	76.9	7.7	5.8	3.8	1.9	1.9	1.9	0.0	100.0
70-75세 미만	35	71.4	5.7	2.9	2.9	8.6	5.7	0.0	2.9	100.0
75-80세 미만	24	58.3	12.5	4.2	4.2	8.3	4.2	8.3	0.0	100.0
80-85세 미만	5	80.0	0.0	0.0	0.0	0.0	0.0	20.0	0.0	100.0
85세 이상	3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최종학력										
무학	44	77.3	4.5	4.5	4.5	4.5	2.3	2.3	0.0	100.0
초등 졸업	47	68.1	8.5	4.3	2.1	4.3	6.4	4.3	2.1	100.0
중학교 졸업	20	85.0	5.0	0.0	0.0	5.0	0.0	5.0	0.0	100.0
고졸 이상	7	42.9	28.6	14.3	0.0	14.3	0.0	0.0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86	74.4	5.8	4.7	3.5	3.5	3.5	3.5	1.2	100.0
사별	31	67.7	12.9	3.2	3.2	9.7	0.0	3.2	0.0	100.0
별거 또는 이혼	2	50.0	0.0	0.0	0.0	0.0	5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97	72.2	8.2	5.2	2.1	5.2	2.1	4.1	1.0	100.0
겸업농가	22	72.7	4.5	0.0	9.1	4.5	9.1	0.0	0.0	100.0

4. 고령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실태

- 대다수의 고령농업인들이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며, 국민연금 가입율은 26%로 조사되었음.

표 3-27. 연금 가입 현황

단위: %, 명

	사례수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민간 보험	기타	없음	계
전체	492	26.3	1.4	0.1	1.5	4.5	1.0	65.2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5	23.6	1.8	0.0	1.8	7.3	1.8	63.6	100.0
도시인접지역	129	24.0	1.6	0.0	0.8	3.1	0.0	70.5	100.0
중산간 농업지역	204	26.5	0.5	0.5	3.4	3.4	0.5	65.2	100.0
농업중심지역	119	31.1	1.7	0.0	0.0	4.2	1.7	61.3	100.0
성별									
남	246	27.6	2.0	0.4	1.6	4.1	0.8	63.4	100.0
여	261	25.7	0.4	0.0	1.9	3.8	0.8	67.4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9	23.7	0.8	0.3	2.3	2.8	0.8	69.4	100.0
노인/자녀가구	118	36.4	2.5	0.0	0.0	7.6	0.8	52.5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7	33.7	1.1	0.5	0.5	6.4	0.5	57.2	100.0
70-75세 미만	163	29.4	0.6	0.0	2.5	1.8	0.6	65.0	100.0
75-80세 미만	91	11.0	1.1	0.0	3.3	2.2	2.2	80.2	100.0
80-85세 미만	47	14.9	4.3	0.0	2.1	6.4	0.0	72.3	100.0
85세 이상	19	36.8	0.0	0.0	0.0	0.0	0.0	63.2	100.0
최종학력									
무학	196	24.5	0.5	0.0	1.5	3.1	1.0	69.4	100.0
초등 졸업	194	22.7	0.5	0.0	3.1	5.2	0.5	68.0	100.0
중학교 졸업	82	31.7	1.2	0.0	0.0	2.4	1.2	63.4	100.0
고졸 이상	30	48.5	9.1	3.0	0.0	6.1	0.0	33.3	100.0
무응답	2	50.0	0.0	0.0	0.0	0.0	0.0	5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44	27.6	1.2	0.3	2.3	4.4	1.2	63.1	100.0
사별	161	24.8	1.2	0.0	0.6	3.1	0.0	70.2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0.0	0.0	0.0	10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25	25.2	0.9	0.0	2.1	3.1	0.7	68.0	100.0
겸업농가	82	34.1	2.4	1.2	0.0	8.5	1.2	52.4	100.0

- 각종 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은 전체 492명 가운데 92명(18.7%)으로 조사됨.

표 3-28. 연금보험료 납부 여부

단위: %, 명

	사례수	없음	있음	계
전체	492	81.3	18.7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73.6	26.4	100.0
도시인접지역	127	79.5	20.5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85.7	14.3	100.0
농업중심지역	116	79.3	20.7	100.0
성별				
남	235	83.8	16.2	100.0
여	257	79.0	21.0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87.0	13.0	100.0
노인/자녀가구	111	62.2	37.8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79.6	20.4	100.0
70-75세 미만	158	81.6	18.4	100.0
75-80세 미만	89	87.6	12.4	100.0
80-85세 미만	45	80.0	20.0	100.0
85세 이상	19	68.4	31.6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79.5	20.5	100.0
초등 졸업	189	86.2	13.8	100.0
중학교 졸업	80	78.8	21.3	100.0
고졸 이상	16	54.2	45.8	100.0
무응답	2	50.0	5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80.7	19.3	100.0
사별	159	82.4	17.6	100.0
별거 또는 이혼	2	100.0	0.0	100.0
미혼	0	0.0	0.0	0.0
기타	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84.1	15.9	100.0
겸업농가	76	65.8	34.2	100.0

- 연금 수혜를 받고 있는 농업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12만 7천원, 공무원연금 115만원, 사학연금 100만원, 군인연금 20만 6천원, 개인연금 14만 7천원 등으로 조사됨.

표 3-29. 월평균 연금 수령액

단위: 만원, 명

	사례수	전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	기타
수급자 평균	492	19.1	12.7	115.0	100.0	20.6	14.7	7.3
최저수급액	.	3	3	80	100	7	7	5
최고수급액	.	150	40	150	100	80	33	10
없다	356	356	380	486	491	483	480	488
있다	136	136	112	6	1	9	12	4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8.0	2.9	1.9	0.0	1.5	1.4	0.2
도시인접지역	127	5.3	2.6	2.0	0.0	0.4	0.3	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4.4	2.9	0.6	0.5	0.3	0.1	0.0
농업중심지역	116	5.6	3.2	2.0	0.0	0.0	0.3	0.1
성별								
남	235	7.0	3.4	2.6	0.4	0.1	0.3	0.1
여	257	3.8	2.4	0.3	0.0	0.6	0.4	0.1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13.7	10.6	1.2	0.4	0.7	0.7	0.1
노인/자녀가구	111	21.9	10.0	10.1	0.0	0.2	1.3	0.3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6.7	4.1	1.1	0.6	0.0	0.8	0.1
70-75세 미만	158	4.5	3.1	0.7	0.0	0.7	0.0	0.0
75-80세 미만	89	3.9	1.2	1.7	0.0	0.7	0.2	0.1
80-85세 미만	45	6.4	0.7	5.2	0.0	0.2	0.3	0.0
85세 이상	19	2.6	2.6	0.0	0.0	0.0	0.0	0.0
최종학력								
무학	190	3.7	2.1	0.8	0.0	0.5	0.2	0.1
초등 졸업	189	4.3	2.7	0.5	0.0	0.4	0.7	0.0
중학교 졸업	80	4.6	3.3	1.0	0.0	0.0	0.3	0.1
고졸 이상	31	21.6	6.1	14.2	1.2	0.1	0.0	0.0
무응답	2	0.0	0.0	0.0	0.0	0.0	0.0	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6.0	3.3	1.4	0.3	0.5	0.4	0.1
사별	159	3.9	2.1	1.4	0.0	0.1	0.2	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
기타	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4.8	2.9	1.1	0.0	0.4	0.3	0.1
겸업농가	76	8.1	3.1	3.1	1.3	0.0	0.5	0.1

- 고령농업인의 72%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떠한 의료보험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율도 18.1%에 달함. 특히 여자가 의료보험이 없는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음.

표 3-30. 의료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사례수	본인의 국민 건강보험	자녀의 국민 건강보험	의료 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민간 건강보험	기타	없음	합계
전체	518	34.9	37.1	2.9	6.0	0.6	0.4	18.1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6	50.0	41.1	5.4	1.8	1.8	0.0	0.0	100.0
도시인접지역	133	27.8	54.9	2.3	4.5	1.5	0.0	9.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207	44.9	29.5	3.4	2.9	0.0	1.0	18.4	100.0
농업중심지역	122	18.9	28.7	1.6	14.8	0.0	0.0	36.1	100.0
성별									
남	247	40.1	36.8	2.0	5.3	0.8	0.0	15.0	100.0
여	271	30.3	37.3	3.7	6.6	0.4	0.7	21.0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8	35.1	35.3	3.1	5.2	0.5	0.5	20.4	100.0
노인/자녀가구	130	34.6	42.3	2.3	8.5	0.8	0.0	11.5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90	36.8	41.1	1.6	6.8	0.5	0.5	12.6	100.0
70-75세 미만	163	39.3	30.1	3.1	6.7	0.0	0.6	20.2	100.0
75-80세 미만	93	34.4	34.4	5.4	3.2	1.1	0.0	21.5	100.0
80-85세 미만	50	18.0	46.0	4.0	6.0	2.0	0.0	24.0	100.0
85세 이상	22	27.3	45.5	0.0	4.5	0.0	0.0	22.7	100.0
최종학력									
무학	205	32.7	42.0	5.9	3.9	0.5	0.5	14.6	100.0
초등 졸업	197	41.6	36.0	1.5	3.6	0.5	0.5	16.2	100.0
중학교 졸업	81	28.4	27.2	0.0	17.3	0.0	0.0	27.2	100.0
고졸 이상	33	24.2	36.4	0.0	6.1	3.0	0.0	30.3	100.0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44	40.7	35.8	1.7	4.7	0.6	0.6	16.0	100.0
사별	172	23.3	40.1	5.2	8.1	0.6	0.0	22.7	100.0
별거 또는 이혼	2	50.0	0.0	0.0	50.0	0.0	0.0	0.0	100.0
미혼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32	35.4	38.0	2.3	4.4	0.5	0.5	19.0	100.0
겸업농가	86	32.6	32.6	5.8	14.0	1.2	0.0	14.0	100.0

표 3-31.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매월)

단위: %, 명

	사례수	평균	없음	5만원 미만	5-10	10만원 이상	계
전체	314	3.0	27.1	48.1	22.0	2.9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39	4.6	5.1	46.2	46.2	2.6	100.0
도시인접지역	90	3.2	37.8	33.3	23.3	5.6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15	1.9	30.4	61.7	7.0	0.9	100.0
농업중심지역	70	3.5	20.0	45.7	31.4	2.9	100.0
성별							
남	156	3.1	23.7	52.6	21.2	2.6	100.0
여	158	2.9	30.4	43.7	22.8	3.2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233	2.5	33.0	48.1	16.3	2.6	100.0
노인/자녀가구	81	4.3	9.9	48.1	38.3	3.7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25	3.4	21.6	51.2	22.4	4.8	100.0
70-75세 미만	103	2.9	27.2	48.5	22.3	1.9	100.0
75-80세 미만	52	2.0	40.4	44.2	13.5	1.9	100.0
80-85세 미만	22	3.8	22.7	36.4	40.9	0.0	100.0
85세 이상	12	2.7	33.3	50.0	16.7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10	3.1	26.4	43.6	27.3	2.7	100.0
초등 졸업	130	2.8	26.9	53.1	16.2	3.8	100.0
중학교 졸업	53	3.3	24.5	50.9	22.6	1.9	100.0
고졸 이상	20	1.6	28.0	27.8	11.1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216	3.0	25.0	50.9	21.8	2.3	100.0
사별	97	2.9	32.0	41.2	22.7	4.1	100.0
별거 또는 이혼	1	3.0	0.0	100.0	0.0	0.0	100.0
미혼	0	.	0.0	0.0	0.0	0.0	100.0
기타	0	.	0.0	0.0	0.0	0.0	10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261	2.7	30.3	47.5	20.3	1.9	100.0
겸업농가	53	4.4	11.3	50.9	30.2	7.5	100.0

- 고령농업인의 가구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2%로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표 3-32. 고용보험 가입자 유무(가구원 전체 대상)

단위: %, 명

	합계	있다	없다	계
전체	492	1.2	98.8	100.0
65-70세 미만	181	1.1	98.9	100.0
70-75세 미만	158	0.0	100.0	100.0
75-80세 미만	89	1.1	98.9	100.0
80-85세 미만	45	6.7	93.3	100.0
85세 이상	19	0.0	100.0	100.0

-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한 비율은 1%에 불과함. 농업분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농업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보여짐.

표 3-33. 산재보험(농업인안전공제)가입 유무

단위: %, 명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492	1.0	99.0	100.0
65-70세 미만	181	1.7	98.3	100.0
70-75세 미만	158	0.0	100.0	100.0
75-80세 미만	89	0.0	100.0	100.0
80-85세 미만	45	2.2	97.8	100.0
85세 이상	19	5.3	94.7	100.0

- 산재보험(농업인 안전공제)의 가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수혜자도 0.2% 정도로 매우 미미함.

표 3-34. 산재보험(농업인 안전공제) 수혜자 유무

단위: %, 명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492	0.2	99.8	100.0
65-70세 미만	181	0.0	100.0	100.0
70-75세 미만	158	0.6	99.4	100.0
75-80세 미만	89	0.0	100.0	100.0
80-85세 미만	45	0.0	100.0	100.0
85세 이상	19	0.0	100.0	100.0

- 조사대상 고령농업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농업인은 5.9%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일반 수급자는 3.5%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2.4%인 것으로 나타남.

표 3-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실태

단위: %, 명

	사례수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일반 수급자 이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조건부 수급자 이다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계
전체	492	3.5	2.4	94.1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5.7	3.8	90.6	100.0
도시인접지역	127	1.6	2.4	96.1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5.1	2.6	92.3	100.0
농업중심지역	116	1.7	1.7	96.6	100.0
성별					
남	235	2.1	2.1	95.7	100.0
여	257	4.7	2.7	92.6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3.9	2.4	93.7	100.0
노인/자녀가구	111	1.8	2.7	95.5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2.2	1.7	96.1	100.0
70-75세 미만	158	1.9	2.5	95.6	100.0
75-80세 미만	89	7.9	3.4	88.8	100.0
80-85세 미만	45	6.7	4.4	88.9	100.0
85세 이상	19	0.0	0.0	100.0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6.8	3.7	89.5	100.0
초등 졸업	189	1.6	2.1	96.3	100.0
중학교 졸업	80	1.3	1.3	97.5	100.0
고졸 이상	31	0.0	0.0	100.0	100.0
무응답	2	0.0	0.0	10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2.1	2.7	95.2	100.0
사별	159	6.3	1.9	91.8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100.0	100.0
미혼	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3.1	1.9	95.0	100.0
겸업농가	76	5.3	5.3	89.5	100.0

- 고령농업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에 달함. 여자, 자녀동거가구, 겸업 농가가 상대적으로 탈락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3-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탈락 경험

단위: %, 명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492	3.5	96.5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7.5	92.5	100.0
도시인접지역	127	1.6	98.4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4.6	95.4	100.0
농업중심지역	116	1.7	98.3	100.0
성별				
남	235	1.3	98.7	100.0
여	257	5.4	94.6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3.1	96.9	100.0
노인/자녀가구	111	4.5	95.5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3.3	96.7	100.0
70-75세 미만	158	1.3	98.7	100.0
75-80세 미만	89	6.7	93.3	100.0
80-85세 미만	45	6.7	93.3	100.0
85세 이상	19	0.0	100.0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2.6	97.4	100.0
초등 졸업	189	5.3	94.7	100.0
중학교 졸업	80	2.5	97.5	100.0
고졸 이상	31	0.0	10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2.1	97.9	100.0
사별	159	6.3	93.7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100.0	100.0
미혼	0	0.0	0.0	0.0
기타	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2.6	97.4	100.0
겸업농가	76	7.9	92.1	100.0

-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한 비율이 가장 높고, 재산액 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 본인이 탈락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율도 17.6%나 되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이유

단위: %, 명

	사례수	소득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이유를 모르겠다	기타	계
전체	17	0.0	11.8	70.6	0.0	17.6	0.0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4	0.0	25.0	25.0	0.0	50.0	0.0	100.0
도시인접지역	2	0.0	50.0	50.0	0.0	0.0	0.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9	0.0	0.0	88.9	0.0	11.1	0.0	100.0
농업중심지역	2	0.0	0.0	100.0	0.0	0.0	0.0	100.0
성별								
남	3	0.0	0.0	100.0	0.0	0.0	0.0	100.0
여	14	0.0	14.3	64.3	0.0	21.4	0.0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12	0.0	16.7	58.3	0.0	25.0	0.0	100.0
노인/자녀가구	5	0.0	0.0	100.0	0.0	0.0	0.0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6	0.0	16.7	66.7	0.0	16.7	0.0	100.0
70-75세 미만	2	0.0	0.0	50.0	0.0	50.0	0.0	100.0
75-80세 미만	6	0.0	16.7	83.3	0.0	0.0	0.0	100.0
80-85세 미만	3	0.0	0.0	66.7	0.0	33.3	0.0	100.0
85세 이상	0	0.0	0.0	0.0	0.0	0.0	0.0	100.0
최종학력								
무학	5	0.0	0.0	80.0	0.0	20.0	0.0	100.0
초등 졸업	10	0.0	10.0	70.0	0.0	20.0	0.0	100.0
중학교 졸업	2	0.0	50.0	50.0	0.0	0.0	0.0	100.0
고졸 이상	0	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0	0.0	0.0	0.0	0.0	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7	0.0	14.3	57.1	0.0	28.6	0.0	100.0
사별	10	0.0	10.0	80.0	0.0	10.0	0.0	100.0
별거 또는 이혼	0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11	0.0	18.2	54.5	0.0	27.3	0.0	100.0
겸업농가	6	0.0	0.0	100.0	0.0	0.0	0.0	100.0

- 긴급지원제도는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95%나 되는 대다수가 이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8. 긴급지원제도 인지 정도

단위: %, 명

	합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총합		계
						비인지	인지	
전체	492	82.5	12.4	4.9	0.2	94.9	5.1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83.0	15.1	1.9	0.0	98.1	1.9	100.0
도시인접지역	127	76.4	20.5	3.1	0.0	96.9	3.1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83.7	11.7	4.1	0.5	95.4	4.6	100.0
농업중심지역	116	87.1	3.4	9.5	0.0	90.5	9.5	100.0
성별								
남	235	79.1	14.5	6.0	0.4	93.6	6.4	100.0
여	257	85.6	10.5	3.9	0.0	96.1	3.9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81.4	12.9	5.8	0.0	94.2	5.8	100.0
노인/자녀가구	111	86.5	10.8	1.8	0.9	97.3	2.7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76.8	17.1	6.1	0.0	93.9	6.1	100.0
70-75세 미만	158	82.9	12.7	4.4	0.0	95.6	4.4	100.0
75-80세 미만	89	83.1	9.0	6.7	1.1	92.1	7.9	100.0
80-85세 미만	45	97.8	2.2	0.0	0.0	100.0	0.0	100.0
85세 이상	19	94.7	5.3	0.0	0.0	100.0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81.6	12.1	5.8	0.5	93.7	6.3	100.0
초등 졸업	189	86.8	9.5	3.7	0.0	96.3	3.7	100.0
중학교 졸업	80	83.8	12.5	3.8	0.0	96.3	3.8	100.0
고졸 이상	31	61.3	29.0	9.7	0.0	90.3	9.7	100.0
무응답	2	50.0	50.0	0.0	0.0	10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79.8	15.4	4.5	0.3	95.2	4.8	100.0
사별	159	88.7	5.7	5.7	0.0	94.3	5.7	100.0
별거 또는 이혼	2	50.0	50.0	0.0	0.0	10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82.5	12.5	5.0	0.0	95.0	5.0	100.0
겸업농가	76	82.9	11.8	3.9	1.3	94.7	5.3	100.0

- 고령농업인의 약 80%는 이웃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권역별로 보면 산간/해안지역과 중산간 농업지역에서는 약 90%정도가 이웃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일수록 긴급지원제도의 발동 여건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39.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경험

단위: %, 명

	사례수	전혀 없었다	한 두 번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종합		계
					없다	있다	
전체	492	79.7	15.9	4.5	79.7	20.3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88.7	11.3	0.0	88.7	11.3	100.0
도시인접지역	127	73.2	19.7	7.1	73.2	26.8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85.7	10.7	3.6	85.7	14.3	100.0
농업중심지역	116	72.4	22.4	5.2	72.4	27.6	100.0
성별							
남	235	80.4	16.2	3.4	80.4	19.6	100.0
여	257	79.0	15.6	5.4	79.0	21.0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79.8	16.8	3.4	79.8	20.2	100.0
노인/자녀가구	111	79.3	12.6	8.1	79.3	20.7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73.5	21.5	5.0	73.5	26.5	100.0
70-75세 미만	158	80.4	14.6	5.1	80.4	19.6	100.0
75-80세 미만	89	85.4	10.1	4.5	85.4	14.6	100.0
80-85세 미만	45	91.1	8.9	0.0	91.1	8.9	100.0
85세 이상	19	78.9	15.8	5.3	78.9	21.1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78.4	15.3	6.3	78.4	21.6	100.0
초등 졸업	189	79.9	16.4	3.7	79.9	20.1	100.0
중학교 졸업	80	87.5	11.3	1.3	87.5	12.5	100.0
고졸 이상	31	67.7	25.8	6.5	67.7	32.3	10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5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80.7	16.6	2.7	80.7	19.3	100.0
사별	159	77.4	14.5	8.2	77.4	22.6	100.0
별거 또는 이혼	2	100.0	0.0	0.0	10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80.5	15.9	3.6	80.5	19.5	100.0
겸업농가	76	75.0	15.8	9.2	75.0	25.0	100.0

- 고령농업인의 82.1%는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권역별로는 산간/해안지역과 도시인접지역의 고령농업인은 타 지역에 비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40. 노후생활준비 시기와 정도

단위: %, 명

	사례수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는 하지 못했다	당장의 생계 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계
전체	492	8.9	8.9	25.8	56.3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7.0	1.9	37.7	43.4	100.0
도시인접지역	127	9.4	22.0	34.6	33.9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6.6	4.6	20.9	67.9	100.0
농업중심지역	116	8.6	5.2	19.0	67.2	100.0
성별						
남	235	11.9	8.5	28.9	50.6	100.0
여	257	6.2	9.3	23.0	61.5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10.2	10.2	24.4	55.1	100.0
노인/자녀가구	111	4.5	4.5	30.6	60.4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12.7	14.4	21.0	51.9	100.0
70-75세 미만	158	7.0	7.0	27.8	58.2	100.0
75-80세 미만	89	6.7	2.2	31.5	59.6	100.0
80-85세 미만	45	6.7	8.9	31.1	53.3	100.0
85세 이상	19	5.3	5.3	15.8	73.7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6.8	11.1	28.4	53.7	100.0
초등 졸업	189	8.5	7.4	30.7	53.4	100.0
중학교 졸업	80	7.5	8.8	13.8	70.0	100.0
고졸 이상	31	29.0	6.5	12.9	51.6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11.2	9.1	29.3	50.5	100.0
사별	159	4.4	8.8	18.9	67.9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10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9.4	9.6	25.0	56.0	100.0
겸업농가	76	6.6	5.3	30.3	57.9	100.0

- 고령농업인들은 노후생활에 관한 대비를 전반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15.2%), 농지매입 또는 임대(12.0%), 공적연금(9.3%) 등을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3-41. 노후생활 대비 내용(수단)

단위: %, 명

	사례수	저축	보험	농지매입 또는 임대	공적 연금	개인 연금	각종 계	주택 구입	주식, 증권 구입	기타	아무 대책도 없음	계
전체	492	15.2	1.8	12.0	9.3	2.2	1.2	7.1	0.0	1.2	66.5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1.3	7.5	28.3	18.9	3.8	5.7	37.7	0.0	1.9	32.1	100.0
도시인접지역	127	32.3	0.8	19.7	5.5	1.6	2.4	7.1	0.0	0.8	52.0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10.2	1.0	3.1	8.2	2.6	0.0	0.0	0.0	1.5	79.1	100.0
농업중심지역	116	6.9	1.7	11.2	11.2	1.7	0.0	5.2	0.0	0.9	76.7	100.0
성별												
남	235	17.0	3.0	13.6	11.9	3.0	2.6	6.0	0.0	2.1	61.3	100.0
여	257	13.6	0.8	10.5	7.0	1.6	0.0	8.2	0.0	0.4	71.2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17.3	2.1	12.1	9.2	2.6	1.0	7.3	0.0	0.8	65.6	100.0
노인/자녀가구	111	8.1	0.9	11.7	9.9	0.9	1.8	6.3	0.0	2.7	69.4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22.7	3.3	13.3	9.4	1.7	1.7	11.6	0.0	0.6	59.1	100.0
70-75세 미만	158	13.3	1.3	11.4	11.4	3.2	0.6	3.8	0.0	0.0	70.3	100.0
75-80세 미만	89	7.9	0.0	10.1	9.0	3.4	1.1	4.5	0.0	4.5	71.9	100.0
80-85세 미만	45	11.1	2.2	13.3	4.4	0.0	2.2	6.7	0.0	0.0	68.9	100.0
85세 이상	19	5.3	0.0	10.5	5.3	0.0	0.0	5.3	0.0	5.3	73.7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14.7	1.1	6.8	10.0	1.6	0.0	4.2	0.0	2.1	67.4	100.0
초등 졸업	189	15.9	2.1	14.3	8.5	3.2	1.1	7.9	0.0	1.1	65.1	100.0
중학교 졸업	80	10.0	2.5	12.5	3.8	1.3	2.5	8.8	0.0	0.0	73.8	100.0
고졸 이상	31	25.8	3.2	29.0	25.8	3.2	6.5	16.1	0.0	0.0	51.6	100.0
무응답	2	5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17.2	2.4	12.7	11.5	2.7	1.5	7.3	0.0	1.5	61.0	100.0
사별	159	11.3	0.6	10.7	5.0	1.3	0.6	6.9	0.0	0.6	77.4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미혼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15.4	1.7	12.3	9.4	2.4	1.2	7.9	0.0	1.0	65.4	100.0
겸업농가	76	14.5	2.6	10.5	9.2	1.3	1.3	2.6	0.0	2.6	72.4	100.0

- 현재 자신이 마련하고 있는 노후 대비가 충분할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보면, 현재의 노후 대비 방법으로 그런대로 노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고령농업인은 20%를 약간 웃도는 정도이며, 대다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표 3-42. 노후생활 대비 정도

단위: %, 명

	사례수	충분할 것이다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노후 생활을 할수 있음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매우 부족할 것이다	잘 모르 겠다	종합			계
							충분	부족	잘 모르 겠다	
전체	492	1.6	21.5	26.8	44.7	5.3	23.2	71.5	5.3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9	15.1	22.6	50.9	9.4	7.9	11.1	9.4	100.0
도시인접지역	127	3.1	34.6	26.0	32.3	3.9	42.1	21.0	3.9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1.5	21.9	25.0	44.9	6.6	40.4	38.9	6.6	100.0
농업중심지역	116	0.0	9.5	32.8	55.2	2.6	9.6	29.0	2.6	100.0
성별										
남	235	3.0	27.2	27.2	38.3	4.3	62.3	43.8	4.3	100.0
여	257	0.4	16.3	26.5	50.6	6.2	37.7	56.3	6.2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1.8	23.1	26.5	43.6	5.0	83.3	75.9	5.0	100.0
노인/자녀가구	111	0.9	16.2	27.9	48.6	6.3	16.7	24.1	6.3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2.2	24.9	22.1	48.1	2.8	43.0	36.1	2.8	100.0
70-75세 미만	158	1.3	20.9	29.1	44.9	3.8	30.7	33.2	3.8	100.0
75-80세 미만	89	1.1	15.7	29.2	42.7	11.2	13.2	18.2	11.2	100.0
80-85세 미만	45	2.2	28.9	28.9	33.3	6.7	12.3	8.0	6.7	100.0
85세 이상	19	0.0	5.3	36.8	47.4	10.5	0.9	4.5	10.5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0.5	15.3	38.4	39.5	6.3	26.3	42.0	6.3	100.0
초등 졸업	189	2.1	27.5	21.2	43.4	5.8	49.1	34.7	5.8	100.0
중학교 졸업	80	1.3	16.3	17.5	62.5	2.5	12.3	18.2	2.5	100.0
고졸 이상	31	6.5	38.7	12.9	41.9	0.0	45.2	54.8	0.0	100.0
무응답	2	0.0	0.0	50.0	0.0	50.0	0.0	0.3	5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1.5	23.0	27.2	44.1	4.2	71.1	67.0	4.2	100.0
사별	159	1.9	18.9	25.8	45.9	7.5	28.9	32.4	7.5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50.0	50.0	0.0	0.0	0.6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1.7	22.4	26.9	43.3	5.8	87.7	83.0	5.8	100.0
겸업농가	76	1.3	17.1	26.3	52.6	2.6	12.3	17.0	2.6	100.0

- 노후생활 보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본인의 책임이며, 자녀 등 가족의 책임이라고 보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3. 노후 생활비 마련 책임

단위: %, 명

	사례수	자신이 스스로	자녀 및 가족	사회보장제도 통해 국가적차원	기타	계
전체	492	26.2	18.3	54.9	0.6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34.0	20.8	45.3	0.0	100.0
도시인접지역	127	25.2	27.6	45.7	1.6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31.1	14.3	54.6	0.0	100.0
농업중심지역	116	15.5	13.8	69.8	0.9	100.0
성별						
남	235	31.5	14.9	52.8	0.9	100.0
여	257	21.4	21.4	56.8	0.4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28.9	16.0	54.6	0.5	100.0
노인/자녀가구	111	17.1	26.1	55.9	0.9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29.3	17.7	53.0	0.0	100.0
70-75세 미만	158	24.1	17.1	58.2	0.6	100.0
75-80세 미만	89	24.7	19.1	55.1	1.1	100.0
80-85세 미만	45	24.4	17.8	55.6	2.2	100.0
85세 이상	19	26.3	31.6	42.1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25.8	18.9	54.7	0.5	100.0
초등 졸업	189	29.1	19.6	51.3	0.0	100.0
중학교 졸업	80	17.5	18.8	61.3	2.5	100.0
고졸 이상	31	35.5	3.2	61.3	0.0	100.0
무응답	2	0.0	50.0	5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29.6	16.3	53.5	0.6	100.0
사별	159	19.5	22.0	57.9	0.6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50.0	5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28.1	16.6	54.6	0.7	100.0
겸업농가	76	15.8	27.6	56.6	0.0	100.0

- 고령농업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57.7%에 달한 반면 건강상태가 아주 좋다고 느끼는 경우는 2.8%에 불과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음.

표 3-44. 자신의 건강 상태 판단

단위: %, 명

	사례수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아주 나쁘다	계
전체	492	2.8	17.1	22.4	43.3	14.4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9	13.2	26.4	35.8	22.6	100.0
도시인접지역	127	0.8	20.5	29.1	43.3	6.3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5.6	17.9	23.0	39.8	13.8	100.0
농업중심지역	116	0.9	13.8	12.1	52.6	20.7	100.0
성별							
남	235	3.4	24.3	25.1	38.3	8.9	100.0
여	257	2.3	10.5	19.8	47.9	19.5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2.6	17.8	24.1	42.5	12.9	100.0
노인/자녀가구	111	3.6	14.4	16.2	45.9	19.8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3.9	17.7	26.5	41.4	10.5	100.0
70-75세 미만	158	3.2	19.6	24.1	39.9	13.3	100.0
75-80세 미만	89	2.2	11.2	14.6	51.7	20.2	100.0
80-85세 미만	45	0.0	11.1	22.2	48.9	17.8	100.0
85세 이상	19	0.0	31.6	5.3	36.8	26.3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3.2	13.7	22.1	42.6	18.4	100.0
초등 졸업	189	3.2	19.0	28.0	36.5	13.2	100.0
중학교 졸업	80	0.0	12.5	17.5	61.3	8.8	100.0
고졸 이상	31	6.5	38.7	3.2	45.2	6.5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10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3.0	19.0	22.4	44.1	11.5	100.0
사별	159	2.5	13.2	22.6	40.9	20.8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0.0	0.0	10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2.9	15.4	23.8	44.7	13.2	100.0
겸업농가	76	2.6	26.3	14.5	35.5	21.1	100.0

- 고령농업인의 만성질병 유병률은 45.7%로 절반 가량이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병 유병률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5. 만성질환 유병률(1개월 이내)

단위: %, 명

	사례수	있다	없다	계
전체	492	45.7	54.3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39.6	60.4	100.0
도시인접지역	127	39.4	60.6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39.8	60.2	100.0
농업중심지역	116	65.5	34.5	100.0
성별				
남	235	36.6	63.4	100.0
여	257	54.1	45.9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44.4	55.6	100.0
노인/자녀가구	111	50.5	49.5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39.8	60.2	100.0
70-75세 미만	158	45.6	54.4	100.0
75-80세 미만	89	58.4	41.6	100.0
80-85세 미만	45	44.4	55.6	100.0
85세 이상	19	47.4	52.6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44.2	55.8	100.0
초등 졸업	189	41.3	58.7	100.0
중학교 졸업	80	58.8	41.3	100.0
고졸 이상	31	45.2	54.8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44.4	55.6	100.0
사별	159	49.1	50.9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100.0	100.0
미혼	0	0.0	0.0	0.0
기타	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45.4	54.6	100.0
겸업농가	76	47.4	52.6	100.0

- 고령농업인 중에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어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경우가 13.0%에 달함. 노후의 소득 확보가 어려운데 비해 만성질병과 노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의료비가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46. 자기부담 과다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 수급 경험

단위: %, 명

	사례수	예	아니오	비해당	계
전체	492	13.0	84.3	2.6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17.0	83.0	0.0	100.0
도시인접지역	127	6.3	91.3	2.4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8.7	90.3	1.0	100.0
농업중심지역	116	25.9	67.2	6.9	100.0
성별					
남	235	8.1	89.8	2.1	100.0
여	257	17.5	79.4	3.1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12.6	85.0	2.4	100.0
노인/자녀가구	111	14.4	82.0	3.6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12.7	85.6	1.7	100.0
70-75세 미만	158	13.3	83.5	3.2	100.0
75-80세 미만	89	15.7	82.0	2.2	100.0
80-85세 미만	45	8.9	88.9	2.2	100.0
85세 이상	19	10.5	78.9	10.5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14.2	83.2	2.6	100.0
초등 졸업	189	7.9	91.5	0.5	100.0
중학교 졸업	80	21.3	72.5	6.3	100.0
고졸 이상	31	16.1	77.4	6.5	100.0
무응답	2	0.0	10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12.1	85.8	2.1	100.0
사별	159	15.1	81.1	3.8	100.0
별거 또는 이혼	2	0.0	10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13.2	85.1	1.7	100.0
겸업농가	76	11.8	80.3	7.9	100.0

- 정부가 농촌 노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할 시책으로는 교통수당과 경로수당 등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노인 보건 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설 확대 등을 들고 있음.

표 3-47.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농촌노인복지서비스

단위: %, 명

	사례 수	교통수당 등 경로연금지원 확대	농촌노인 일자리 확대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원 확대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기타	계
전체	492	54.1	5.1	12.4	3.7	24.0	0.8	100.0
권역별								
산간/해안지역	53	67.9	7.5	11.3	1.9	9.4	1.9	100.0
도시인접지역	127	44.9	8.7	17.3	7.9	20.5	0.8	100.0
중산간 농업지역	196	50.0	3.6	15.3	2.0	29.1	0.0	100.0
농업중심지역	116	64.7	2.6	2.6	2.6	25.9	1.7	100.0
성별								
남	235	47.7	6.8	14.5	4.7	25.1	1.3	100.0
여	257	59.9	3.5	10.5	2.7	23.0	0.4	100.0
가구형태								
노인가구	381	53.5	5.0	13.6	3.4	23.6	0.8	100.0
노인/자녀가구	111	55.9	5.4	8.1	4.5	25.2	0.9	100.0
연령대								
65-70세 미만	181	55.8	7.2	10.5	3.9	21.0	1.7	100.0
70-75세 미만	158	48.1	5.7	15.8	3.2	26.6	0.6	100.0
75-80세 미만	89	62.9	3.4	7.9	2.2	23.6	0.0	100.0
80-85세 미만	45	51.1	0.0	15.6	6.7	26.7	0.0	100.0
85세 이상	19	52.6	0.0	15.8	5.3	26.3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90	51.1	3.7	14.2	4.7	26.3	0.0	100.0
초등 졸업	189	56.6	5.3	12.7	2.6	22.2	0.5	100.0
중학교 졸업	80	63.8	8.8	5.0	5.0	15.0	2.5	100.0
고졸 이상	31	32.3	3.2	19.4	0.0	41.9	3.2	100.0
무응답	2	50.0	0.0	0.0	0.0	50.0	0.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331	50.2	5.4	13.3	2.4	27.8	0.9	100.0
사별	159	61.6	4.4	10.7	6.3	16.4	0.6	100.0
별거 또는 이혼	2	100.0	0.0	0.0	0.0	0.0	0.0	100.0
미혼	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의 직업유형								
전업농가	416	54.8	4.6	13.7	4.1	22.1	0.7	100.0
겸업농가	76	50.0	7.9	5.3	1.3	34.2	1.3	100.0

제 4 장

외국의 고령농 소득지원 정책

1. 일본의 사례

1.1. 공적연금제도

-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공제조합’이라고도 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적연금의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임.
- 국민연금은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등의 노령, 장애, 사망과 사고에 관한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은 1959년 4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복지연금(1959.1)과 각출제 연금(1961.4)이 시작되었음. 1985년 법 개정으로 피용자 및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로 발전하였음. 제도 발족 당시 이미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무각출로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노령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급여 내용으로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사망일

시금, 노령복지연금 등이 있음. 노령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65세부터 지급됨. 40년 가입 시 수급하는 완전 노령기초연금의 수준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20% 수준이며 이는 대략 최저생계비에 해당됨.

- 국민연금은 주로 보험료 수입으로 조달되며,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정액으로 부과됨.

○ 농업경영이양연금은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자가 수급자격이 있음.

- 경영이양연금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경영이양자가 원하는 시기부터 지급됨. 연금액은 연금단가, 보험료 납부 완료 개월 수,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가산형과 기본형 연금으로 구분됨. 영농 후계자에게 경영승계를 할 경우에는 특례부가연금이 지급되어 농업 후계자 확보에도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

○ 농업자 노령연금은 경영이양이 불가능했거나 경영이양을 하지 않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이양을 한 농가보다 낮은 금액의 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함. 농업자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경영이양연금의 1/2 정도임.

1.2. 생활보호제도

○ 1950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일본국 헌법 제25조의 생존권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생활보호제도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생활부조 외에 주택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 수단’이며, 사회보험과 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현물급부(의료부조)와 현금급부(생활보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로 구성되며, 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한 급부를 실시함.
 - 급여 종류별 급여기준(금액)은 피보호자의 연령,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름.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급여수준은 표준 생계비의 2/3 수준이며, 최저임금 수준과 비슷함.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보호비율이 아주 낮고(1% 정도임), 신청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음.
 -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 중의 46% 정도가 고령자 세대이며 의료보조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3. 고령자 취업지원

- 고령자 취업대책으로는 인재은행, 노인능력개발 정보센터, 농림수산업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인재은행에서는 고령자의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을 무료로 실시함. 노동성에서는 기업이 인재은행을 통해 노인을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함.
 - 노인능력개발 정보센터에서는 노인취업지도 및 소개, 노인 적합 직업의 조사연구, 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함.
 - 농림성에서는 다양한 고령 친화적인 농업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면,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임. 그리고 노인이 비육우를 사육하는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임산물 또는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음.
- 일본은 농촌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만들기 사

업과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에서는 학교규모의 적정화, 정보화교육지원, 복식수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복지마을 만들기’는 고령자나 장애인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을 없애자는 ‘장애 제거(Barrier Free)’ 가치관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 농협에서는 ‘고령자생활충실활동’ 및 ‘고령자생활원조활동’ 등을 통해서 농촌노인들의 취업 및 소득을 지원하고 있음.

- 농협에서는 농촌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촌락농장·농원 만들기를 장려하고 있으며, 농촌노인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자급운동을 지원함.

2. 영국의 사례

2.1. 공적연금제도

○ 영국의 공적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제2국가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이루어진 2층 체제임.

- 기초연금(Basic State Retirement Pension)은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급여는 기여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기여기간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지급됨.
- 남성의 경우는 44년, 여성의 경우는 39년(최대 근로기간인 49년 및 44년에서 5년을 뺀 년 수)의 기여조건을 충족해야 완전연금을 수급하며, 기여 년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급여비도 감액됨. 2005년 당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에 도달해야 함.
- 2010년부터는 여성의 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20년 4월에는 남성과 동일하게 65세가 될 예정임.

- 제2국가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1978년에 도입한 제도인 소득비례국가연금(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이 2002년 4월에 개편된 것임.
 - 제2국가연금은 소득비례국가연금의 골간은 그대로 살리되, 저 소득자의 소득비례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 주당 75 ~ 89 파운드 미만의 저 소득자는 기여하지 않아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장 수준을 높여 줌.
 - 보험료를 할인을 통해 중간 이상의 소득자는 점차 적립식 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이동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 외에 80세 이상 고령자연금(Over 80 Pension)은 평생 소득이 없었거나 최저 한계소득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여 보험료 기여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임.
 - 연금 지급조건은 무 각출 연금 신청 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80세 이상이어야 함. 이 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자가 아니거나, 지급자일 경우에는 완전 기초연금의 60%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2.2. 공공부조제도

- 비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1949년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라는 명칭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음.
 - 1966년에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1988년에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영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국민의 최저생계소득을 보장하는 안전망의 역할과 사회보험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함.
- 현행 영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는 소득지원, 주택급여, 소득기반

구직자수당, 지방세 급여, 근로가족소득지원, 사회기금보조금, 소득부가, 근로 장애인 소득지원 등이 있음.

- 소득지원(Income Support)은 노령, 질병, 장애, 부양책임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없는 16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급여임.
- 주택급여(Housing Benefit)는 자산조사를 통과하고 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소득기반 구직자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은 기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업자, 주당 1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함.
- 지방세급여(Council Tax Benefit)는 저소득층의 지방세 납부를 대신 해 주는 것임.
- 근로가족소득지원(Working Family Tax Credit)은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사회기금보조금(Social Fund Grants)은 자산조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아수당, 장제수당, 동절기수당, 동절기난방수당을 제공하고, 이들의 긴급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사업을 수행함. 사회기금보조금은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특수한 상황에 처해서 통상적인 수입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정부에서 지급함.
- 소득부가(Earnings Top-up)는 부양아동이 없는 전일제 저소득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임.
- 근로 장애인 소득지원(Disabled Persons' Tax Credit)은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조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급여임.

2.3. 사회적 서비스

- 영국의 사회적 서비스는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시설보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며,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임.

-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 주체에 따라 공식적 서비스와 비 공식적 서비스로 나누어짐.
 - 공식적 서비스는 지방정부(사회서비스국),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민간 단체에 의해 공급될 수 있음.
 - 비공식적 서비스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재가보호(Domociliary Care), 주간보호(Day Care), 시설보호(Residencial Care)로 나누어짐.

3. 독일의 사례

3.1. 연금보험제도

-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노동자·직원·광부연금제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러한 공적 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험료 부담 및 급여체계는 거의 동일함.
 - 독일 노인층의 소득원천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임.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연금제도도 서독제도를 기준으로 통합되었음.
 - 노동자연금제도는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상공업,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 직원연금제도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와 교사, 간호사, 조산원, 예술가, 작가 및 기타 사무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 광부연금제도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독일은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경기 침체, 인구구조의 고령화, EU 통화의 통합 등으로 연금재정이 압박되어 여러 차례 지출억제정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음.
 - 2004년도 독일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이 연금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되었고 일정 급여 수준의 보장은 이차적 목표가 되고 있음.
 - 본인 기여율을 상향 조정하고 [19.1% → 20%(2020년), 22%(2030년)] 부담한계선을 설정하였음. 또한 급여 수준을 70%에서 64%(2030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 소득 보장 제도를 마련하였음.
 - 취약 계층을 위한 크레딧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실업 등에 대한 ‘기여인정제도’ 를 도입하였음.

- 농민노령부조법은 1957년에 처음 제정되어 농업경영자와 그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되었으며, 1994년에 ‘농민사회보험개혁법’ 이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농민노령부조법은 이 법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업경영자는 농민노령금고에서 정한 최소 규모 이상의 농업, 임업, 채소·과수재배업,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종사원은 25세 이상 3촌 이내의 친척이 포함됨.
 - 농민사회보험개혁법에 의하여 배우자는 가족 종사원이 아니라 별도의 농업경영자로서 가입하도록 하였고, 농민에 대한 연금급여 산정 방식을 정액방식에서 다른 공적 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농민노령부조의 급여에는 재활급여,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농지이양연금 등이 있는데, 농민노령부조의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야 함.

- 농업경영자의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65세 이상이고 농업 경영권을 9년 이상 이양했으며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

부한 자임.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농업 경영권을 9년 이상 이양하고, 60세 또는 생계활동 불능 전까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임.

- 농민노령부조의 문제점으로는 ① 농업종사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며, ② 별도의 연금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연금제도를 통한 집단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임.

3.2. 사회(공공)부조 및 긴급 지원

- 사회(공공)부조는 사회적으로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여금 없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식비, 주거비, 생활비, 광열비, 기타 잡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임.
 - 노령연금만으로 생활이 되지 않는 저 연금 노인들은 대부분 사회부조에 의존함.
 - 사회부조에는 특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으며 노인에게는 평균 기준 액의 20~50% 정도를 가산해서 부조하는데, 이를 ‘특별수요 추가보조’ 라고 함.
- 독일의 사회부조(Sozialhilfe)제도는 1961년에 연방사회부조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화됨.
 - 지원내역으로는 생계비 보조, 특별한 상황(수발, 노년)에 대한 보조를 들 수 있으며, 재원은 조세와 각종 단체 후원금임.

3.3. 고용보장제도

- 실업보험은 실업을 당한 자의 자질을 개발하여 사회에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 기간 본인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급여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실업보험은 보수를 받고 고용된 노동자 및 직원과 직업훈련중인 자가 당연 적용대상임.

- 실업보험에 있어서 직업조성 조치로는 ① 훈련 및 직업알선, ② 직업 및 노동 상담, ③ 직업 훈련 촉진, ④ 취업자에 대한 재교육 촉진, ⑤ 장애자의 취업 알선, ⑥ 노동시장 및 직업 조사 등이 있음.
- 휴업 시에 근로자는 임금이 삭감 또는 지급되지 않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경우 일자리를 유지시켜 주고, 삭감된 임금을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기 위하여 단기근로수당을 지급함.
-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사무소에 실업신고를 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실업수당은 실업신고 및 급여신청이 이루어진 날부터 지급되며,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6개월, 최대 32개월 까지 지급됨.

○ 고용보장 정책으로 정년연장제도와 고령자고용제도 등이 있음.

- 190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정년퇴직제도는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음. 1996년에 제정된 “고령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법”도 정년연장을 위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음.
- 2000년 들어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는데, 가능한 한 조기퇴직의 바람을 재우는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점차로 늘린다는 것이었음. 1996년 8월 1일 처음 제정, 공포된 “노인부분고용(시간제고용)”은 조기퇴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교육이나 훈련이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농촌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외형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제도 도입기간의 일천함 등으로 인해서 농촌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내실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기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중구조 방식의 공적 연금제도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의 기초급여제도로 영국은 기초연금, 일본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그리고 소득에 준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영국은 제2국가연금(소득비례연금), 일본은 근로자를 위한 후생연금을 실시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농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예를 들면, 일본은 농업자연금과 경영이양연금제도가, 독일은 농업경영이양연금과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가 있음.
 - 일본의 농업자연금제도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이라는 지금까지의 정책목적과 함께, 농업인(후계농업인)의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단순한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 그리하여 건강한 농촌노인들이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서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알맞은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리고 노인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음.

제 5 장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1.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1.1. 농업구조조정 필요성

-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농업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농업소득은 늘지 않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0년 이후 농업총생산액이 31~35조원 대의 ‘박스권’에서 정체되는 경향이며, 앞으로도 국내 소비를 전제로 한 농업생산 증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2015년 농업총소득은 대략 1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업농 호당 평균 농업소득을 4천만원(농가소득의 8할을 농업소득으로 상정)으로 가정할 때 약 30만호의 농가에 분배될 규모로, 중소농의 몫까지 고려하면 호당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음.
- 농업기계화·시설자동화 등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현재 1조원 농업총생산에 약 5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계화·자동화 진전에 따라 소요인력(취업계수)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므로, 전업농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가 불가피함.
- 청년층의 후계인력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업경영주의 유연한 은퇴가 전제되어야 함.

○ 농업의 총체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요소(자원), 경영주체, 생산 품목 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개선과 투융자 지원 등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생산요소 구조조정: 농지나 가축 등 자원의 규모경제를 도모
- 농업경영체 구조조정: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 육성
- 생산품목 구조조정: 시장 수요와 국제경쟁력 있는 농산물 품목 중심으로 생산

1.2.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성격 재정립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구조정책과 함께 미시적인 경영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첫째, 구조·경영정책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 시장 메카니즘에 맡겨 놓으면 완만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농업구조를 관련 정책수단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 또는 세대교체를 계기로 할 만큼의 장기간이 필요함. 더욱이 농업이 타산업과 대등한 생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혁이 요구됨.

○ 둘째, 사회적 저항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 농업구조조정이란 궁극적으로 농지를 비롯한 고정적 생산요소를 재배분하거나 소득분배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음. 특히 토지이용권의 조정에는 많은 영세농가의 이농과 탈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며, 따라서 농촌사회에 내재한 전통적인 제도나 관습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등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구조정책은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생산정책과 보완관계를 갖지만, 가격정책과는 상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특히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중소농을 온존시킴으로써 대농 층으로의 농지유동화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구조변화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가격억제정책을 채택해 온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임.

1.3.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체계화

- 농업구조정책은 단지 효율적인 산업을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며, 농업의 국민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임.
-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농업인은 자유투입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

(1) 농업의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의 확립

- 농업의 국민경제적 기능은 국민의 식량공급, 국토자원 및 환경의 보전, 농촌인력의 고용과 소득기회 제공, 농촌사회의 규모와 기능 유

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및 농가 유형별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함.

- 예를 들어 식량안보 기능은 전업농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기능이며,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업농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진흥지역 밖의 겸업농가가 담당하게 되는 고용창출이나 농촌사회 유지 등의 역할도 중요함.

(2) 다양한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제도의 확립

- 우리 농업의 근간은 가족농(family farm)이며 앞으로도 가족농 체제가 유지될 것이지만, 농가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생산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중소기업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협업경영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가족농과 협력하는 보완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3) 농가 유형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맞춤형농정” 확립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업농과 겸업농은 농업정책의 주된 대상으로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이농·탈농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정책, 과도적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해야 함.

2.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제도의 현황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 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 과 시민단체 및 정당 등의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하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원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 타법령 지원액 - 주거급여액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 수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A)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타법령지원액(B)	60,400	101,196	135,706	168,998	195,396	222,705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자료: 보건복지부.

2.2. 경로연금

-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폐지하고, 1997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1998년 7월부터 시행한 연금임.

- 1998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임. 즉, 200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과 67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노인이 대상임.

○ 경로연금의 내용

- 지급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 지급액(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월 4.5~5만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 26,000~35,000원

2.3. 경로우대 제도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할인우대를 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로우대 제도의 내용

- 철도요금 30~50%할인, 수도권전철, 고궁, 국·공립박물관 무료이용,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요금의 10~20% 할인
- 교통 수당(지자체별 차등) : 8천원~15천원/월
- 장수 수당(일부 지자체) : 20천원~30천원/월, 대상자 : 80세, 85세, 90세 이상 고령자
- 건강진단비(일부 지자체) : 10천원/월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70천원/월

2.4.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고령농업인이 쌀농사를 그만두고자 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1997년 2월에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하여 1ha당 일시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함.
- 경영이양직불제의 내용
 - 농지를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
 - 지급 대상 : 63~69세 고령 농업인
 - * 매도 : 290만원/ha/ (70세까지 최장 8년 매월 241천원 지급)
 - * 임대 : 298만원/ha (1회 지급)

2.5.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를 농어촌지역에 확대하여 1995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며, 경과조치로 60세를 넘은 고령농업인들이 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2000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령자에 대한 특례노령연금 제도를 운용하였음.
 - * '06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408천명의 평균 수급액 : 127천원/월
- 농업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여, 2007년에 농어민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선을 28만 1,000원으로 인상함.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95~'03년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지원
 - * 2004~'05년 12등급까지 50% 지원, 13~45등급은 12등급 보험료의 50% 정액
 - 전체 45등급 가운데 2006년까지는 1~13등급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는데, 2007년에는 50% 지원등급 범위를 14등급으로 확대함.

2.6. 기초노령연금 제도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2007.4.25)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중 7%를 대상으로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를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임.
 - 보건복지부는 2007년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2008년 4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각각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확인 조사를 거친 뒤 연금 수령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임.
- 제도의 주요 내용
 - 목적 :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
 - 급여 대상 : 전체 노인의 60% 대상 지급(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노인 가구)

표 5-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분포

단위: 천명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20	2030
국민기초	425	443	463	484	707	1,076
차 상 위	439	455	477	506	739	1,125
일 반	2,029	2,034	2,021	1,978	2,613	3,304
총 수급인원	2,893 (60.0%)	2,932 (58.4%)	2,961 (57.0%)	2,968 (55.4%)	4,059 (51.9%)	5,505 (46.3%)
전체노인인구	4,822	5,021	5,192	5,354	7,821	11,899

자료: 보건복지부.

- 급여 수준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 * 평균지원단가 : '08년(89천원/월/인) '09년(94), '10년(100)
 - * 부부동시 수급시 : 16.5% 감액하여 지원
- 비용 부담 : 국가 및 지자체 분담
 - * 시·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 40~9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국가 부담

- * 시·군·구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정하되,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시행 시기 : 2008년부터 6개월 단위 단계적 확대 시행
- * '08.1월 70세 이상, '08.7월 65세 이상

3. 고령농 소득지원의 필요성과 의의

3.1. 현행 고령농 소득지원 제도의 한계

-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
 - 현행 노인복지제도는 전반적으로 도시 노인을 위주로 설계됨.
 - * 공공부조(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취업증진제도 등도 도시민 중심임.
 - 1995년 도입된 국민연금(농어민연금)의 실질적인 수혜는 2014년이 되어야 실현될 전망
 - *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한 농업인들도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연금보험료 불입을 못하게 되어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음.
 - 농업인은 농가주택과 농지 소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실정
 - * 농민단체에서도 영세농의 농지자산을 소득환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고령농업인들은 소득원 부족으로 생계영농이 불가피한 실정
 - 고령농업인의 대부분이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비한 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바라는 실정임.

3.2. 현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한계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면서 전업농의 규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정책의 상승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낮은 보조금 수준, 농업인의 농지보유 의향, 관련 정책과의 부조화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농업구조조정과 영농규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책효과는 예상 밖으로 저조한 실정임.
 - 2002년 이후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정부에서도 제도의 존폐를 검토하기도 하였음.

표 5-3.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량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 (백만원)	27,319	21,710	17,366	11,240	5,480	1,686	4,300	14,100	22,103
사업량 (ha)	10,588	8,132	6,483	4,021	1,952	600	1,500	4,650	7,267

자료: 한국농촌공사.

- 현행 경영이양 직불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단가가 낮아 고령농의 영농은퇴에 대한 동기 부여가 적으며, 특히 생계형 고령농의 은퇴 유도에 미흡
 - 농지 매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도 중심으로 설계됨으로써 중도계약 해지, 임대기간 종료 후 영농에 재종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
 - 쌀농업과 농업진흥지역 논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밭이 제외됨으로써 경영은퇴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
 - 2000년부터 논농업 직불제,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등으로 은퇴보다는 위탁영농을 선택하는 경향

3.3. 고령 은퇴농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의미

- 고령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농업경영의 은퇴를 앞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적인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특히 현재의 고령 농업인들은 대부분 1960~70년대의 식량 증산과 고도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세대이므로, 과거의 기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

- 경영은퇴 촉진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 고령농업인의 자연스런 경영은퇴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한 농지가 잔류농가에게 이전되어 점진적인 영농규모화를 도모
 - *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수는 549천명, 이들의 보유 농지는 484천ha에 달함.
 - 고령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한 젊은 농업인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통하여 영농후계자 진입과 세대 교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4.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4.1.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가. 도입 방향과 목적

- 선진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후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연령을 초과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한시적 대

책으로 지원

- 농외취업이 어렵고 경쟁에서 탈락할 처지에 있는 고령농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규모화 뒷받침
-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은퇴를 하고 싶어도 소득원 부족 등으로 은퇴를 지연하는 고령농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농촌사회 안정을 도모

나. 시행 기간

- 농업구조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고령농의 소득안전망이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 운영
 -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한·미 FTA 주요 이행기간) 운영
 - * '17년까지 은퇴를 신청한 농가는 80세까지 지속 지급
 - 10년간 운영 후 농업구조개선 상황을 판단하여 연장 여부 검토
 - * 대상 연령 및 지급기간 등을 조정하여 조기은퇴직불로 개편

다. 대상자 및 대상농지

- 65세 이상, 영농경력 20년 이상, 농촌거주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취미·부업농 및 축산농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 및 취미·부업농 제외
 - * 폐업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고령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규모화·전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인위적인 규모화 정책의 필요성이 적은 축산(한우, 양돈, 양계, 낙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다만, 복합영농으로 경종농업을 겸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은퇴할 경우 경작농지(논, 밭)에 대해 지원
- 규모화가 미흡한 경종(논작물, 밭작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
 -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은 농지와 같이 면적 기준으로 지원

표 5-4. 고령 은퇴농 생활안정 지원과 경영이양 직불제의 비교

구분	고령 은퇴농 생활안정지원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17년 * 경영이양직불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 ~ 2007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구조개선 • 은퇴농 생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산업 구조개선 • 은퇴농 생활안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농 - 70세 이상(65~69신청가능) - 영농경력 2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한계농 - 63 ~ 69세 - 영농경력 10년 이상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거주 의무 • 모든 상업적 농업 생산에서 은퇴 • 경작농지 경영이양 - 매도, 장기임대, 휴경 - 농지형상유지 • 잔류농지 0.3ha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거주 무관 • 쌀 농업에서 은퇴 • 소유농지 경영이양 - 매도, 장기임대 • 잔류농지 0.1ha 허용 * 1필지가 0.1ha 초과시 0.2ha 까지 허용
대상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농지 - 소유농지(2년이상 임대 농지 제외) + 5년이상 임차지 * 휴경지와 초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논 - 소유농지 * 휴경지와 초지 제외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 임대, 휴경 동일 금액 - 250천원/월/ha • 지급상한(2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 임대 차등 - 매도(최대 8년) : 241천원/월/ha - 임대(1회) : 2,977천원/ha • 지급상한(2ha)
지급방식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시점부터 80세까지 최장 11년 * '17년까지 은퇴할 경우 80세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 이양시 은퇴 시점부터 70세까지 최장 8년간 지급 • 임대시 1회 지급 - 5년이 후 재 임대시 추가지원

- 대상농지는 점차 농지 전체로 확대하되 휴경지나 초지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현행 경영이양 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원대상이 한정됨.
-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쌀산업 이외의 밭작물에 대해서도 영농규모화의 필요성 증대
 - * 다만, 농지원부에 논, 밭, 과수원으로 기재된 농지로 제한
 - * 실제 경작지는 지목 변경하여 신청 가능(실경작지 지목변경 유도)
- 신청 직전 2년 이상 임대지, 휴경지, 초지는 제외
 - *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농지로 활용이 곤란한 농지 제외

라. 지급 조건, 지급액, 지급 방법, 소요 예산

- 상업적 농업으로부터 영구 은퇴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촌거주를 조건으로 지급
 - 소유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2ha 이상 및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영구 임대하도록 규정
 - * 임대 이양의 경우 허위 임대차를 막기 위해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임대차된 농지만 적용
 - 고령농의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0.3ha까지의 영농을 허용
 - * 취미 수준의 생산이 축산업 구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은퇴전 축산 농가에 한정하여 한우 1두, 돼지 3두, 가금 10수까지 허용
 - 경영여건이 불리하여 경영이양이 곤란한 경우 휴경이나 경관보전직불 참여시 은퇴로 인정(쌀 직불, 조건불리 직불 대상농지에서 제외)
 -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고령농가는 소득보전 목적의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계약기간 이후 영농에 종사해도 동일 적용)

-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이 받는 복지혜택은 지속 부여
- 은퇴전 농가별 농업소득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지급액 설정
 - 지급액은 매매, 임대, 휴경 모두 동일금액 지급
 - * 농지가격 상승으로 매매에 의한 규모 확대의 실효성 저하
 - 지급액 : 경영이양 면적(경작면적 - 잔류농지) × 지급단가
 - * 경작면적 : 지급신청 이전에 5년간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 면적
(소유농지 + 5년이상 임차지 - 2년이상 임대지 - 휴경지)
 - * 임차지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에 대해서 지원, 이중지원 방지
 - 지급단가 : 250~300천원/ha/월(농업소득 - 자가노동비 - 임대소득)
 - * 현행 경영이양 직불제 지급단가 : 매도시(2,891천원/ha), 임대시(595)
- 농가당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 500천원/월(2ha)
 - '03~'05년 70세 이상 농가의 평균농업소득(529천원/월) 수준
 - * 65세 이상 농가수(비중)/면적 : 549천호(43.2%)/585천ha(32.1)
 - * 65세 이상 농가중 2ha 이상 농가수(비중)/면적 : 42천호(7.7%)/169천ha(28.8)
- 은퇴 시점부터 78세까지 최장 11년간 지급
 - 한국인 평균수명, 고령농의 은퇴시기 지연추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지급연령을 78세로 설정
 - * 평균수명('05년) : 78.6세(남자 : 75.1, 여자 : 81.9)
 - * 15세 이상 농가인구 95% 해당 연령('05년) : 78세
 - 79세 이상 고령농을 위해 '09년까지 특례규정 적용
 - * '08~'09년 은퇴시 연령에 상관없이 최소 5년간 지급, '10년부터 대상에서 제외

○ 연도별 소요예산

- 25만원/ha 지급시 총 소요예산('09-28년) : 79,345억원
 - * ('09-13년) 21,305억원, ('09-18년) 58,241, ('09-28년) 79,345
- 30만원/ha 지급시 총 소요예산('09-28년) : 95,214억원
 - * ('09-13년) 25,566억원, ('09-18년) 69,889, ('09-23년) 91,934

마. 지원근거 및 시행방안

○ 근거규정 마련

- i 안 : FTA 이행 특별법 개정안에 근거규정 마련
- ii 안 : 농업경영체 육성법 제정안에 근거규정 마련
- iii안 : 현행 경영이양 직불제 근거규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 * 경영이양 직불제 지원근거 :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 규정

○ 재원조달 방안

- 고령농의 은퇴율, 사망률 등에 따라 소요재원의 변동이 커서 예산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 은퇴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소요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 FTA 이행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FTA 이행지원 기금 확충을 통해 필요한 재원 조달하는 방안으로 추진
- FTA 이행 특별법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예산당국과 협의 추진

바. 쌀 직불제와의 관계

-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농업구조개선을 저해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70세 이상 농업인에 대한 쌀 직불금의 지급 중단
 - 원활한 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적용방안 마련

- i) 2년간('08~'09) 유예 후 '10년부터 80세 이상에 적용하도록 하고 매년 1세씩 조정하여 70세 이상 고령농을 쌀 소득직불 대상에서 제외
- ii) 허용보조인 고정직불금은 지급하되, 변동직불금은 지급 중단
- iii) 조기에 쌀 직불제를 농가단위 직불제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4.2.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

- 고령농의 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해 농지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주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의 도입
 -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
 - * 농지 판매수입이 대출금(연금)을 초과할 경우 잔액은 수급자(또는 상속자)에게 지급
 - * 수급자 또는 상속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농지 소유권은 유지
 - 10년형, 20년형, 30년형, 종신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종신형 위주로 설계
 - 수명연장, 금리상승, 지가하락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정부 보증
 - * 대출금이 농지판매 수입을 초과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위 변제
 -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는 적립된 보증재원(기금)으로 충당
 - 보증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로 조성하되 손실을 대비하여 금융기관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 * 농업인이 납부할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대신 납부하되 대출총액에 포함
 - * 농업인 보증료 예시 : 초기보증료는 지가의 2%, 년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5%
- 부부 모두 65세 이상, 토지 기준시가 5억원 미만의 은퇴농 대상

- 주택 역모기지론을 벤치마킹하여 대상자 기준 설정
 - * 주택역모기지 : 부부 모두 65세 이상,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세대 1가구
- 농지 등 보유재산이 많은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농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 농지와 관련되지 않은 부채는 고려대상에서 제외
- 공적보증을 통하여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고령 은퇴농에게 가능한 많은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
 - 월 지급액은 지가상승률, 보증료, 할인율에 따라 차등
 - * 농지 역모기지론 가입시 월 수령액 : 농지가격 1억원 평가시 65세 28만원, 70세 35만원, 80세 45만원, 85세 57만원 등임.
 - 농지가격 상승률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융상품 설계 필요
 - * 1994~'05년간 농지가격 상승률 : 3.28%(한국토지공사 지가변동률 조사)

4.3. 고령 은퇴농을 위한 농촌 일자리 창출

- 고령 은퇴농에 대한 고용지원 시스템 마련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등의 추진 사업을 총괄하여 은퇴농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 고령 농업인의 공공근로 사업 참여를 위해 군·면 단위 지자체 등과 연계
 - 지역농협의 인력지원단을 활성화시켜 고령 농업인의 인력시장 형성
 - 앞으로 확대될 사회적 일자리에 건강한 고령 은퇴농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 고령 은퇴농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정비
 - 농촌정책 및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 * 농어촌 민박·숙박업 확대, 향토산업 활성화 등 농림부 지원사업을 통한 취업기회 확충
 - * 일자리 창출, 복지 개선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대책 수립 촉진
 - 한·미 FTA로 인한 무역조정지원 방안으로 은퇴농을 포함한 기존 농업종사 인력에 대한 타분야로의 재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참 고 문 헌

- 김정호 외,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김정호, “농업구조의 쟁점과 진로”,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김정호 외,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김정호 외,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농림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 박대식,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박대식 외,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박현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제출논문), 2004.
-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2007.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미발간자료), 2007.4.

부록: 2006년 농가경제통계 소득분포 분석

1.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개요(천원)

		농가소득		농업소득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전체		33,591	0.88	12,772	1.70
영농형태별	미작	31,011	0.78	8,550	1.40
	채소	29,228	0.74	12,279	1.35
	과수	39,494	0.82	15,941	1.31
	축산	23,501	0.82	3,911	3.27
	기타	45,670	0.99	24,696	1.61
농가소득별	1천만원 미만	4,691	1.93	-1,440	-6.28
	1-2천만	15,048	0.19	5,066	0.87
	2-3천만	24,660	0.12	9,260	0.86
	3-5천만	38,652	0.15	14,676	0.84
	5-7천만	58,147	0.10	22,100	0.85
	7천-1억	81,606	0.10	32,246	0.88
	1억원 이상	143,160	0.43	70,010	1.07
경영주연령별	30-34세	53,783	0.63	3,878	1.90
	35-39	33,775	0.56	12,660	1.35
	40-44	41,035	0.84	15,122	1.76
	45-49	44,917	0.74	20,523	1.34
	50-54	43,571	0.84	18,838	1.51
	55-59	41,901	0.71	15,381	1.28
	60-64	37,057	0.96	14,443	2.14
	65-69	29,518	0.82	10,647	1.40
	70-74	22,318	0.74	7,366	1.19
	75-79	19,100	0.62	4,836	1.12
80세 이상	13,461	0.73	2,882	1.18	
경지면적별	0.1ha 미만	45,071	1.62	23,995	3.13
	0.1-0.5	27,545	0.89	4,288	3.06
	0.5-1.0	27,029	0.79	5,949	1.54
	1.0-1.5	29,419	0.77	10,135	1.13
	1.5-2	33,819	0.79	15,477	1.12
	2-3	38,192	0.67	20,309	1.07
	3-5	47,946	0.86	25,577	1.17
	5ha 이상	57,999	0.62	33,146	0.87

주: 평균치는 산술평균값이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값은 가중평균의 결과치임.

2. 영농형태별 경영주연령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분포(천원)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미작	농가	34,292	0.65	28,876	0.80	22,688	0.78	18,909	0.61	13,850	0.79
	농업	9,267	1.31	8,869	1.01	6,630	1.06	4,808	0.99	3,305	0.85
채소	농가	34,186	0.53	25,611	0.67	18,430	0.60	18,925	0.60	10,338	0.72
	농업	14,139	0.96	8,820	1.23	5,364	1.06	3,751	1.38	489	7.98
과수	농가	41,375	0.94	37,121	0.83	26,922	0.61	17,070	0.56	17,840	0.64
	농업	16,147	1.12	16,518	1.54	13,287	0.94	6,479	1.07	6,157	0.72
축산	농가	24,304	0.60	14,895	0.82	23,208	0.69	26,682	0.87	10,016	0.29
	농업	8,198	1.31	2,331	5.31	4,060	0.85	1,246	1.96	1,342	1.24
기타	농가	48,156	1.46	37,499	0.82	24,814	0.80	19,289	0.50	16,209	0.59
	농업	30,108	2.38	18,242	1.20	11,322	1.30	7,836	0.93	2,939	0.69

주: 농가는 '농가소득', 농업은 '농업소득'으로 생략하여 표기.

3. 소득계층별 농업인연령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분포(천원)

	나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천만	농가	3,919	1.59	5,733	1.11	7,235	0.36	7,589	0.26	6,824	0.24
	농업	-5,213	-1.96	-896	-9.60	1,467	1.87	1,523	1.68	1,512	1.14
1천만	농가	15,216	0.18	15,382	0.19	14,551	0.19	14,736	0.20	14,720	0.22
	농업	4,861	0.98	5,471	0.74	5,274	0.70	4,401	0.76	4,726	0.81
2천만	농가	24,688	0.12	24,482	0.11	24,329	0.12	24,536	0.13	22,118	0.10
	농업	9,270	0.79	9,959	0.68	8,885	0.73	7,021	0.90	3,098	1.64
3천만	농가	38,752	0.15	38,706	0.15	37,716	0.15	36,227	0.15	38,092	0.14
	농업	14,603	0.81	14,583	0.74	12,425	0.89	7,943	1.12	3,378	0.96
5천만	농가	57,260	0.10	57,856	0.09	57,272	0.10	58,265	0.12	65,823	0.00
	농업	23,769	0.76	21,798	0.81	16,509	1.00	8,787	1.09	1,990	0.00
7천만	농가	81,777	0.11	80,930	0.10	80,906	0.08	77,719	0.00	-	-
	농업	26,616	0.75	28,538	0.96	29,172	1.00	-1,379	0.00	-	-
1억	농가	168,791	0.72	177,173	0.20	115,548	0.14	-	-	-	-
	농업	103,207	1.41	53,148	1.41	7,923	0.82	-	-	-	-

주: 농가는 '농가소득', 농업은 '농업소득'으로 생략하여 표기.

4. 경영주연령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분포(천원)

나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농가소득	37,057	0.96	29,518	0.82	22,318	0.74	19,100	0.62	13,461	0.73
농업소득	14,443	2.14	10,647	1.40	7,366	1.19	4,836	1.12	2,882	1.18

5. 경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분포(천원)

ha	나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평균	변이계수
0.1 미 만	농가	80,972	2.08	30,764	0.82	18,179	0.62	18,163	0.41	6,113	0.38
	농업	69,487	2.56	10,164	1.71	1,643	2.46	2,906	1.63	735	1.20
0.1- 0.5	농가	30,987	0.66	24,200	0.79	17,114	0.63	18,068	0.68	12,051	0.90
	농업	4,795	2.31	3,321	3.00	2,056	1.39	2,236	1.66	1,576	0.83
0.5- 1.0	농가	31,429	0.75	24,254	0.67	19,886	0.66	16,410	0.55	15,644	0.66
	농업	6,149	1.28	5,055	0.91	5,540	0.88	4,362	0.91	2,431	1.48
1.0- 1.5	농가	32,212	0.64	27,478	1.02	24,253	0.84	22,345	0.58	15,391	0.33
	농업	10,550	1.16	9,016	1.22	8,310	0.88	7,185	0.57	8,745	0.28
1.5- 2	농가	36,284	1.05	30,106	0.83	25,242	0.66	29,457	0.60	14,060	0.44
	농업	14,377	1.24	13,762	0.97	12,322	0.78	9,306	0.57	4,230	0.70
2-3	농가	39,805	0.59	35,422	0.67	30,601	0.45	21,399	0.38	16,385	0.03
	농업	20,228	0.87	17,770	0.78	16,244	0.81	13,762	0.62	10,642	0.12
3-5	농가	43,215	0.65	42,447	0.70	41,570	0.75	29,623	0.40	-	-
	농업	25,303	1.03	23,274	1.22	19,133	0.57	18,287	1.07	-	-
5 이상	농가	65,373	0.41	49,911	0.56	48,936	0.52	-	-	-	-
	농업	39,849	0.48	26,494	0.79	33,603	0.91	-	-	-	-

주: 농가는 '농가소득', 농업은 '농업소득'으로 생략하여 표기.

C2007-19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찍은날 2007. 8. 14 펴낸날 2007. 8. 14

발행인 최 정 섭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포럼 Tel. 2242-7120(대)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